

碩士學位論文
UN 韓國臨時委員會(UNTCOK) 研究

- 5 · 10選舉期の役割과 性格을 中心으로 -

1992年 6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河 龍 雲

UN韓國臨時委員團(UNTCOK)研究

- 5·10選舉期の役割과 性格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尹 慶 老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 함.

1992年 6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河 龍 雲


論文認准書

河龍雲의 文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 함.

1992年 6月 日

審査委員長 尹慶芝 

審査委員 尹錫曉 

審査委員 高錫亨 

目 次

| | |
|---|-----|
| I. 머리말 | 1 |
| II. UNTCOK의 결성 배경과 목적 | 5 |
| 1. 배경 | 5 |
| 2. UN에서의 결성 경위 | 26 |
| 3. 취지 및 목적 | 36 |
| III. UNTCOK의 활동과 성격 | 38 |
| 1. UNTCOK 구성원의 신상과 그 성향 | 38 |
| 2. 남·북한총선거 추진기의 활동 : 내한 - 소총회 결정 | 55 |
| 3. 남한단독선거 감시기의 활동 : 소총회결정 이후 - 5·10선거 | 69 |
| 4. 활동의 성격 | 93 |
| IV. 맺음말 | 98 |
| * 참고문헌 | 101 |
| * ABSTRACT | 107 |

I. 머리말

1947년 7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결렬된 이후 1947년 9월 미국은 한국문제를 UN 총회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UN 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이하 UNTCOK라 약칭)이 결성되었다. UNTCOK의 감시하에 실시된 1948년의 5·10 남한 단독선거는 해방 이후 미·소분할점령정책의 일차적 귀결이었으며, 분단 고착화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진행된 5·10 남한 단독선거의 의미와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UN 산하에 임시위원회를 결성 한국에 온 UNTCOK의 창립배경과 활동 및 성격 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의 UNTCOK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UN의 대한(對韓) 활동을 살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5·10 남한 단독선거의 성격과 해방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규정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UNTCOK의 결성은 절대적 우위권을 확보하고 있던 UN을 통해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의지가 공식화된 것이며 따라서 모스크바협정에 따른 미·소 상호 협의에 의한 한국통일방안 모색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미국에 의한 한국문제의 UN이관과 5·10선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¹⁾

1) 한국문제의 UN이관과 관련된 미국의 대한정책과 5·10선거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평가는 수정주의적 관점과 전통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정주의적 관점 : 제임스 I. 매트레이(James Irving Matry)는 한국문제의 UN이관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서, 미국의 정책과 5·10선거를 모두 비판한다. 릴랜드 구드리치(Leland M.

이와 관련하여 UNTCOK의 활동에 관해 국내·외에서 언급한 분산적인 견해와 평가에는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제임스 I. 매트레이(James Irving Matry)는 투표 전과 후에 관찰팀들은 날림으로나마 투표과정을 조사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고 하여 UNTCOK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²⁾

릴랜드 구드리치(Leland M. Goodrich)는 불과 30여명의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고, 선거가 실시되고 있을 때는 9개조가 전국을 순방하였다고 하여 UNTCOK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³⁾

Goodrich)는 미국의 책임을 UN과 회원국에 분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면서 미국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5·10선거에 대한 그의 평가는 매트레이와 동일한 견해를 취하나, 원인을 한국의 촌락구조의 문제 등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을 소련측에 전가하고 있어 수정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태일(李泰一)은 신탁통치를 폐기하고 남한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대한 정책을 냉전정책의 일환으로, 각각 평가하면서 5·10선거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전통주의적 관점 : 존 할리데이(John Holiday)는 남한에서 강력한 반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 같은 미국정책에 관해서는 물론 5·10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조이스 콜코(Joice Kolko), 가브리엘 콜코(Gabriel Kolko)는 미국의 후원하에 한국이 통일되거나 아니면 남한에 별개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며, 미국의 현실적 목적을 위해 이승만(李承晩)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5·10선거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순승(趙淳昇)은 구드리치의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 의한 책임전가를 주장한다. 또한 이에 따른 5·10선거를 긍정적으로 보며, 단정수립의 원인을 소련의 비협조로 돌린다. 김학준(金學俊)은 미·소간 냉전의 산물로 본다. 한정일(韓貞一)은 미국의 일관된 정책의 산물로 평가하며, 5·10선거에 따른 단정수립의 책임을 남로당과 북한에 돌린다.

2) 제임스 I. 매트레이, 구대열 역,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을유문화사, 1989.

3) 릴랜드 구드리치, 편집부 역, <<분단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1983.

존 할리데이(John Holiday)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전 선거과정의 일부분만을 단편적으로 감시했을 뿐이었고, 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책임을 포기했다 라고 하여 UNTCK의 활동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⁴⁾

조순승(趙淳昇)은 법령을 점검하거나 국부적으로 선거과정을 감시하는 행정적인 일에 국한되었다고 하여 UNTCOK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⁵⁾

한편 김학준(金學俊)은 UNTCOK의 활동에 대하여 미군정과 불편한 동반자 관계였다고 하여 다소 불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⁶⁾

한정일(韓貞一)은 UN감시하에서 실시된 이 선거에서 부정·불법이 별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민당(韓民黨)은 집권을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여 UNTCOK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⁷⁾

이처럼 기왕의 연구에서는 5·10선거와 관련하여 일부를 학자들이 UNTCOK의 활동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UNTCOK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것은 무엇보다 UNTCOK 활동의 독자성이 의문시 되는 데다가 그 영향력 역시 미국의 의도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UNTCOK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미국의 의도가 실질적으로 관철되는 UN 산하의 기구라는 측면에서 활동의 독자성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활동상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UNTCOK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4) 존 할리데이, 편집부 역, <<한국현대사>>, 사계절, 1984.

5) 조순승, <<한국분단사>>, 형성사, 1983.

6)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0.

7) 한정일,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2, 동아일보사, 1988.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 의식에서 아래와 같은 UNTCOK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먼저 UNTCOK의 결성배경과 경위, 취지 및 목적을 밝혀 본래의 UNTCOK의 성격이 무엇으로 부터 출발하게 되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는 UNTCOK 구성원의 신상 및 성향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UNTCOK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가능한 상세하게 밝혀보고자 한다. 1948년 1월 8일 부터 동년 5·10선거가 실시 되기까지의 기간은 약4개월에 불과하지만, UNTCOK의 활동은 그 성격상 두 시기로 구분되어 진다. 즉 소총회결정(2.26)을 전후로 하여 남·북한 총선거 추진기(총회결정 수행기)의 1차 활동기와 이후 남한 단독선거 감시기(소총회결정 수행기)의 활동 등 두 시기로 구분되어 진다. 이를 토대로 UNTCOK의 활동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활동의 독자성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UNTCOK가 한국문제를 소총회에 회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UNTCOK가 어떠한 경로와 배경에서 소총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남한 단독선거를 강행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정되는 5·10선거에 대한 자·타율성 규정문제 등을 미국(미군정)과의 관계성에 유념하면서 UNTCOK의 대한 활동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II. UNTCOK의 결성 배경과 목적

이 장에서는 UNTCOK의 결성 배경과 경위, 그리고 어떠한 취지와 목적하에서 결성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UNTCOK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UN산하 특별기구로 결성되기까지의 대내외적 배경과 정세를 살펴보고 그것이 본래 추구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상의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UNTCOK의 실체를 규정짓는 우선적인 작업이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는 한국에서의 UNTCOK활동의 성격규명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 배경

한국문제가 UN에 상정된 배경은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요인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때로는 전자가 후자에, 혹은 후자가 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외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UNTCOK가 성립하게 된 대외적 배경으로 우리는 해방공간에 한반도에서 야기되었던 미·소중심의 국제적 역학관계의 추이를 들 수 있다. 모스크바 협정⁸⁾ 이후 1946년 3월 20일 시작된 1차 미·소공위는 4월 18일 제5호 성명⁹⁾이

8) 동아일보, 1945.12.29. 모스크바협정 중 조선부분 내용(1945.12.28)
조선에 주재한 미·소양국 사령관은 2주일 이내에 회담을 개최,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임시민주정부수립을 지원한다. 또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조선임시정부를 수립케하여 조선의 장래 독립에 대비할 터인바 신탁통치기간은 최고 5년으로 한다. 미·소공위는 임시정부

발표된 이래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문제를 놓고 대립, 1946년 5월 6일 이후 무기 휴회로 들어갔다.¹⁰⁾

1946년 초 “소련과의 협력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미국은 이제 소련과 상호 적대적이고 상호불신하는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한다.”¹¹⁾라는 케난의 ‘긴 전보(long telegram)’에서 이미 표명되었듯이 제1차 미·소공위의 결렬은 미국의 반소·반혁명 전략의 연장이었다.¹²⁾

한편 미·소공위를 재개하려는 남·북 주둔군 사령관 사이의(1946,6 -1947,2) 서신왕래에도 불구하고, 미·소공위의 재개문제가 계속 지연되자 미국무장관 마셜(Marshall)은 1947년 4월 8일자로 소련외상 몰로토프(Molotov)앞으로 공위 재개 촉구를 위한 서신을 보내면서 만약 이에 소련이 응하지 않으면 미국정부가 남한에서 만이라도 동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¹³⁾

이에 소련측의 몰로토프는 회신에서 ‘한국에 관한 모스크바협정을 정확히 이

와 조선의 각종 민주적 단체와 협력하여 동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달을 촉진하고 독립에 기여하는 수단을 강구한다. 이 신탁통치제에 관한 외사이사회의 제안을 검토키 위하여 미·영·중·소 각국정부에 회부한다.

9) 조선일보, 1946.4.19. 제5호 공동성명 내용 : 각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조건에 대한 결정. 첫째, 모스크바협정 결정문 중 제1절의 목적을 지지. 둘째, 협의에 대한 공동위원회 결의 고수. 셋째, 정치적·경제적 진보에 관한 원조방안(신탁)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한다는 데 서명해야 함.

10) 동아일보, 1946.5.10. 서울신문, 1946.5.10.

11) Thomas H. Etzold & John L. Gaddis ed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pp.50. 이 문서의 골자는 대서구 적대론과 대소협력 불가능론으로 요약된다.

12) 이수인, <모스크바3상협정 찬반운동의 성격> <<한국현대정치사 1>> 실천문화사, 1989, 110쪽.

13) 경향신문, 1947.4.13. 동아일보, 1947.4.13. 조선일보, 1947.4.15.

행한다는 기초위에서' 5월 20일 공동위원회의 재개에 동의할 것 이라는 소련측 입장을 밝혔다.¹⁴⁾ 한편 동회신서에서 몰로토프는 한국 지도자들은 1946년 4월 18일에 합의된 제5호 공동성명에 대한 서명만으로써 협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충분하지만 공동위원회의 작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조장하거나 선동한' 정당이나 단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⁵⁾ 이러한 조건부 공위재개 동의안을 미국측이 단서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년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¹⁶⁾

제2차 미·소공위는 몇 회의 실무자회의를 거쳐 6월 7일 최종합의에 이르렀고,¹⁷⁾ 그 내용은 6월 11일 미·소공위 공동성명 제11호로 정당사회단체와의 협의 방법 등에 관해서 발표하였다.¹⁸⁾

이에 따라 6월 25일 미·소공위는 남조선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합동회의가 서울에서 열렸고,¹⁹⁾ 그리고 6월 30일에는 북조선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합동회의가

14) Molotov to Marshall, 1947.4.19, FRUS 1947, VI, 633-634.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40쪽에서 재인용.

15) Molotov to Marshall, 1947.5.8, FRUS 1947, VI, 640-642 ; Marshall to Molotov, 1947.5.12, ibid., 643 ; Langdon to Marshall, 1947.5.11, ibid., 639-640 ; "Soviet Position on Resumption of Joint Commission on Korea", DSB 15(1947.5.18).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41쪽에서 재인용.

16) 서울신문, 1947.5.22.

17) 조선일보, 1947.6.10.

18) 조선일보, 1947.6.12. 동아일보, 1947.6.13. 공동성명 11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대상이 될 정당사회단체는 제5호 성명에 선언한 규정에 의해서 서명해야 한다.(이 성명은 6월 23일까지 제출 요함.) 둘째, 조선임시정부수립의 현장과 정강에 관한 질문서 답신을 7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셋째, 협의에 서명한 남한정당 사회단체와 6월 25일 협의한다. 네째, 협의에 서명한 북한정당 사회단체와 6월 30일 평양에서 협의한다. 다섯째, 7월 5일 서울(덕수궁)에서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구두로 협의를 개시한다.

19) 조선일보, 1947.6.25. 1947.6.26. 동아일보, 1947.6.26. 경향신문, 1947.6.26.

평양에서 개최되었다.²⁰⁾

그러나 7월 5일 미·소공위 미국측 대표 브라운(Albert S. Brown)은 평양체제 중 소련군측으로 부터 받은 제반 편의에 감사하는 뜻을 표하는 동시에, 7월 7일 부터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시하기로 한 조선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구두 협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¹⁾

이에 소련측에서는 미국측의 일방적인 연기선언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두협약'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남·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무차별 화합의 문제점을 들어 무엇이 민주주의적인 정치 및 사회이며 정확히 어느 조선단체와 협조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를 볼 때 까지 구두협약 개시를 거절하였다.²²⁾

이후 미·소공위에서 미국측 태도는 눈에 띌 정도로 경화되어 협의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완강히 거부했으며, 미군정은 모스크바협정에 반대하는 대중의 데모를 금지시킨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미국은 이제 공동위원회의 협상 결렬이라는 최종적이며 필연적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이 명백해 졌다.²³⁾

한편 미국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엘버트. C. 웨더마이어」 중장을 조선과 중국의 정세를 조사하기 위하여 급파하였다. 그의 임무는 조선임시정부 조직에 관한 미·소간 교섭의 정돈상태를 분석하고, 남조선 미국 점령지대에 대한 일방

20) 조선일보, 1947.7.1. 서울신문, 1947.7.4.

21) 서울신문, 1947.7.6.

22) 동아일보, 1947.7.10. 조선일보, 1947.7.10 ; 미국측 주장은 이승만과 김구가 1947년 5월 21일 미·소공위에 보낸 공동질의서 내용이다.

23) Hodge to Marshall, 1947.7.10. FRUS 1947, VI, 697-700 ; New York Times (이하 NYS라 줄임), 1947.7.12, p.4.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49쪽에서 재인용.

적 계획추진의 필요성 여부와 조선에서의 민정실시의 실행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었다.²⁴⁾

웨더마이어(L. C. Wedemeyer)는 남한에 관한 정세 보고에서 “소련과 이 이상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무용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립은 쉽지 않다. 경찰, 민족청년운동은 수많은 고문, 강탈, 잔학행위, 임의체포 등을 자행하여 일반대중들로부터 전반적인 증오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극우파들이 선거결과, 대세를 장악할 것이므로 지정한 자유선거는 불가능하다.”²⁵⁾고 하여 남한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 수립이나 자유선거의 불가능성을 지적하였다.

7월 21일 미·소공위 소련측 수석대표는 논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협의대상문제에 대한 성명서에서 “소련측 대표 또는 미국측 대표가 공동합의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협의를 시작하자고 누차 제의했고, 또 소련측 대표는 반대 또는 주목되는 개별적 정당, 단체의 구체적인 심사를 요구했으나 미국측 대표는 거부했다.”라고 발표하였다.²⁶⁾

이러한 소련측의 성명서에 대해, 8월 1일 미국측 대표 부라운 소장은 회담경과 성명서에서 “비록 소련측이 우파가 정부에 정당하게 참가하려는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또 그와 같은 배제로써 장래의 조선정부를 민전(民戰)이 우세한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만일 미국측 대표가 그들의

24) 서울신문, 1947.7.13.

25) Wedemeyer to J. Leighton Stuart, 1947.9.3, FRUS 1947, VI, 765 ;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Report to the President, September 1947, By Lt. Gen. A.C. Wedemeyer, pp.1-23 ; Wedemeyer Report, 1947.9.19, FRUS 1947, VI, 769-803.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57-158쪽에서 재인용.

26) 조선일보, 1947.7.22. 동아일보, 1947.7.22.

제안을 수락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측 대표단의 유일한 목적은 조선인민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함에 있다. 미국측 대표단의 주장은 어느 단일파가 정부수립에 있어서 우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위원회의 협의에 있어서 극우 또는 극좌가 우세한 지위를 점유함은 취할 바가 아니다.”²⁷⁾라고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문제점은 미국측의 표면적인 목적인 ‘조선인민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과 미국측의 주장인 ‘좌·우 균형의 정부수립’이었으나, 이를 위한 협의대상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소 양국간에 참여한 대립을 야기했던 것이다.

8월 12일 미국은 ‘공동위원회로 하여금 한국독립의 진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마샬의 서한을 몰로토프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한 소련측의 답신이 오기 전에, 공위 미국대표단은 소련이 참여하기를 결정한다면 앞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조건부로 일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8월 23일 소련측의 종합보고서 작성 답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단독보고서를 기정사실화하였다. 결국 미국은 미·소간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보고,²⁸⁾ 미·소공위를 통한 노력을 모두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27) 서울신문, 1947.8.2.

28) Marshall to Smith, 1947.8.11, FRUS 1947, VI, 748-749 ; “U.S. Reduests Report from Joint Commission,” DSB(국무성회보) 17(1947.8.24) : 398-399 ; Jacobs to Marshall, 1947.8.14, 19, ibid., 753-754, 756-757 ; Hodge to Marshall, 1947.8.20, ibid., 757-760 ; Lovett to Jacobs, 1947.8.23, ibid., 764-765 ; “letter from the Soviet Miniser of Foreign Affairs to the Secretary of State,” DSB 17(1947.9.7) : 475.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51-153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정을 거쳐 8월 10일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결렬되었고, 한국문제가 미국에 의해 UN에 상정되는 9월 20일 휴회, 이어 10월 20일 공동위원회의 사무정지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분단의 외적 요인인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의 핵심적 요소는 모스크바협정의 부차적 요소인 신탁통치 조항에 있었다. 동 협정의 핵심사항은 조선임시정부의 수립에 있었으나, 제 1·2차 미·소공위 전 기간동안의 쟁점은 신탁통치와 그에 따른 협의대상의 선정 문제였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모스크바협정의 실천을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남한에 단독정부수립을 계획·집행하는 쪽으로 나아갔고, 따라서 2차 미·소공위는 한국민들의 통일여망을 여과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용되었다.

다음 UNCTCOK가 성립되는 대내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모스크바협정과 미·소공위회담을 둘러싼 대외적 상황과의 밀접한 관련속에서 찾을 수 있다.

1945년 12월 말, 임시정부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미·소공위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국내의 분단체력인 이승만(李承晩)진영과 친일파들은 모스크바협정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신탁통치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전면적인 방해공작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모스크바3상회의의 핵심적 합의를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소련의 제의에 의한 신탁통치 결정'²⁹⁾이라고 왜곡시킴으로써 즉각적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민중의 즉자적, 심정적, 정의적 민족주의 감정의 격렬한 폭발을 유도하였고, 반탁 = 독립 = 반소 = 반공(반좌익) = 애국,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 지지 = 찬탁 = 식민지의 연속 = 친소 = 공산주의 = 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창

29) 동아일보, 1945. 12. 28. 여기에 한민당이 합세하여 이 왜곡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출해 냈다.³⁰

한편 1946년 1월 3일 죄익이 벌인 모스크바 협정 절대지지 시위를 분수령으로 하여 국내의 정국은 분열되었다.³¹ 임시정부(臨時政府)의 金九는 통일정권수립 문제에 관하여 “비상정치회의 소집을 통하여 임정을 확대 강화한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헌법과 선거법을 제정하여 국민대표 대회를 소집, 정식정권을 수립하자”는 내용의 통일정권수립 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³²

1월 7일 韓民黨(元世勳, 金炳魯), 國民黨(安在鴻, 白泓均, 李承複), 人民黨(李如星, 金世鎔, 金午星), 共產黨(李舟河, 洪南杓) 등 4당 대표자들은 8일 2개의 공동 코뮌িকে를 발표하였다.³³ 코뮌িকে는 신탁통치라는 제도는 배격하되 연합국의 우의의 협조는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로는 모스크바 협정에 의한 통일임시정부수립을 지지하였다.

1월 8일 임정 역시 외교부장 조소앙(趙素昂)을 통하여 “임시정부는 신한민족당을 포함한 5당회합을 추진 중”³⁴이라고 밝히고 이 회담을 지지하였다. 이에 반해 한민당은 기존의 합의를 백지화하고 “종래의 신탁통치 반대 태도를 일관하여 주장함.”³⁵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월 9일 신한민족당과 임정측의 김약산

30) 앞의책(박명림), 31쪽.

31) 조선일보, 1946.1.4. 동아일보, 1946.1.4.

32) 서울신문, 1946.1.5. 이것은 미군정에 대한 임정의 첫번째 도전이었다.

33) 조선일보, 1946.1.9.

1. 모스크바3상회의의 조선문제결정에 대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원조한다는 정신과 의도는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신탁은 장래 수립될 우리 정부로 하여금 자주독립의 정신에 기하여 해결케 함.

2. 테러행동에 대하여 정쟁의 수단으로 암살과 테러행동을 감행함은 민족단결을 파괴하며, 국가독립을 방해하는 자멸행동이다. 모든 반민족적 테러행위를 반대하는 동시에, 각종 비밀 테러단체와 결사를 해산하기 바람.

34) 동아일보, 1946.1.9.

35) 동아일보, 1946.1.9.

(金若山) 등의 요인이 참여하여 5당이 회합했으나 결렬되었다.³⁶⁾

이승만은 4대 정당대표가 탁치문제를 논의하였던 1월 7일 곧 강경한 반탁성명을 발표했다.³⁷⁾ 이것은 곧 좌우합작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그는 반탁운동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운동으로 몰아갔고, 한민당은 1월 10일자 기관지를 통하여 신탁통치는 소련안이고 즉각 독립안은 미국안이라고 하여 반소 감정을 부추겼다.³⁸⁾

4당 대표회의에 뒤이어 5당 대표회의가 결렬되자 1월 20일 임시정부측에서는 각계 대표 1명씩 21명을 소집하여 비상정치회의의 제1차 준비회를 개최하였고 1월 23일에는 한민당의 거중조정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³⁹⁾가 합류하여 그 명칭이 비상국민회의로 바뀌었다.⁴⁰⁾

한편 1946년 1월 하지는 워싱턴 당국에 우익계가 남한에서 현재보다 더 광범위하고 통일된 정치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가질 때 까지 미·소공위의 개막을 연기시킬 것을 요청하는 한편 김구와 이승만을 설득, 한국임정을 청산하고 그 대가로 “남조선 국민대표 민주의원”(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 ; 이하 민주의원이라 줄임)을 창설하도록 했다. 물론 최근 하지의 고문으로 남한에 온 프레스턴 굿펠로⁴¹⁾가 이 새로운 자문기구의 주요 구상자였다.⁴²⁾

36) 조선일보, 1946.1.11.

37) 조선일보, 1946.1.8.

38) 송남헌, <<해방3년사 I>> 까치, 19985, 245-258쪽.

39) 이승만 주도로 1945년 10월 23일 결성됨. 국민당, 건국동맹,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등 65개 정당·사회단체가 가맹됨. 11월 16일 조선공산당 탈퇴 후 이어 좌익계열 전부 탈퇴.

40) 송남헌, 앞의책, 272-281쪽.

41) 커밍스에 따르면, 굿펠로는 1945.5.10 이승만의 귀환을 촉진시키는 대가로 전후 한국에서 몇 가지 경제적 이권과 교역상의 권리를 약속받았다. 커밍스는 '솔직히 말해서 하지, 맥아더, 굿펠로 및 이승만이 음모하여 국무성의 기존정책에

이러한 하지의 계획에 대하여 2월 11일 미국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성격의 개혁 등 새 정부가 시행할 정치·경제·사회정책에 대해 여러 한국 정파들간에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고무할 것'이며, 그러나 임시정부의 구성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군정(軍政)을 민정(民政)으로 전환시키려는 하지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만약 미·소공위가 무산될 경우 미 행정부는 남한만에서라도 이 "한국화"계획을 수행할 의도였다.⁴²⁾

미군정은 미·소공위 예비회담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협정에 명백한 반대를 표시하는 반탁주의자들의 집단을 군정의 고문기구로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미·소공위에 대한 미국의 실제적인 입장을 반영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이승만은 여기에 적극 편승하였다.

이 시기 좌익진영은 인민당과 조선공산당의 공동주최로 각 정당·단체 대표자회의를 추진하여 2월 15일 좌익단체만의 참석하에 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戰이라 줄임)을 결성하였고, 그후 미군정의 좌익탄압책 즉, 정판사위폐사건, 좌익계 신문 폐쇄 등으로 인하여 남한의 좌익세력이 쇠퇴함에 따라 민전 또한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된다.⁴³⁾

반대했다.'는 것이다.

42) Nodge to War, 1946.1.22, FRUS VII 6, 613 ; Benninghoff to Byrnes, 1946.1.28, ibid., 627 ; NYT, 1946.1.29.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04쪽에서 재인용.

43) War to Hodge, 1946. 2. 6, 육군성기록, P&) 091 Korea T.S, sec. III, cases 3-15, Box 21, RG 319 ; SWNCC Policy Paper, 1946. 1. 28, FRUS 1946, VII, 624-627.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05쪽에서 재인용.

44) 송남헌, 앞의책, 287-297쪽.

1946년 민전세력 탄압의 주요사건은 노조언론탄압 강화, 5월 해방일보 폐간, 8월 조선인민보 간부 체포, 9월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 등 6개지 폐간과 미군 M.P.의 간부기자 체포, 군산남선신문 정간, 2월 경찰의 해방청년동맹 급습(5명 체포), 5월 정판사 산건으로 이관술, 박낙종 등 다수 체포, 7월 군정청의

이러한 복잡한 상황속에서 1946년 3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에 대해 우익진영 특히 각 애국단체연합이라는 미명하에 구성된 미·소공위 대책연맹이란 단체는 가두방송, 강연회, 좌담회, 성명서, 벽보, 전단살포 등의 방법으로 미·소공위 불참가와 그 해소운동을 전개하였고,⁴⁵⁾ 민주의원 의장이며, 강력한 반소적 발언을 계속해오던 이승만은 3월 중순 의장직 사퇴를 표명하였다.⁴⁶⁾

이 때 1946년 4월 6일 미군정 당국이 미 본국에 제의했다는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설이 AP통신에 의해 보도되었다.⁴⁷⁾ 이 보도는 미군정의 군정장관 러취(Archer L. Lerch)에 의해 곧 부인되었지만, 김구, 국민당, 인민당, 신민당, 전농, 민전, 신한연맹, 공산당, 문화단체총연맹 등 모든 국내 제세력은 미·소공위의 성공을 지지하고 남조선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민주당은 '미·소공위가 좀 더 천연된다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리가 만무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⁴⁸⁾

지시로 경찰의 조공중앙간부 전원 전국수배령 후 이주하 등 다수체포, 조공사무실 명도령, 9월 박헌영, 민전 사무국장 이강국 등 지명수배, 허헌, 이철 등 민전지도자 가택수색, 민전사무실 명도령 등등이다.

45)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간행위원회,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1956, 287쪽.

46) 서울신문, 1946. 3. 21. 이승만이 의장직을 사임한 것은 하지의 압력이라는 설이 있다. 한편 민주의원은 이승만의 사퇴원을 접수치 않고 휴직처리 하였다.

47) 서울신문, 1946. 4. 7.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미점령군당국은 남조선안에 한하여 조선정부수립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미군정 당국은 남조선정부수립계획에 있어서 미국인을 고문격으로 참여하여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조선문제는 조선인에게 일임되리라 한다. 또 일부 정보에 의하면 민주의원 의장을 사임한 이승만은 재차 출마하여 남조선 정부의 主席이 되리라 한다.

4월 8일 이승만은 남조선단독정부 수립설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과도정권 수립의 선결조건으로 38선 철폐를 주장하였고, 만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의 보도에 대하여 논평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였다.⁴⁸⁾

4월 18일 미·소공위 대표들은 '그 목적에서 진정 민주적인 모든 민주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것에 동의하고 임시정부 창설에 대한 미·소간의 결정을 고수할 것을 천명하는 선언에 서명했으며, 이 성명(미·소공위 제5호성명)은 모든 서명자들이 모스크바 협정의 신탁통치 부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⁴⁹⁾

그러나 제1차 미·소공위는 앞에서 살핀것 처럼 5월 8일 미국측의 무기한 연기 제안으로 결렬되었다.

5월말 미국은 하지에게 점령정책의 수립과정에 한국인의 참여를 극대화할 대의정부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⁰⁾ 그리하여 이승만의 강력한 후원자인 프레스턴 굿펠로(M. Preston Goodfellow)는 남한을 떠나기에 앞서 한국인들이 자치정부를 수립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천명하고 소련이 공동위원회의 재개를 거부한다면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지체없이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⁵¹⁾

48) 서울신문, 1946.4.8.

49) 동아일보, 1946.4.9.

50) "Communiqué Issued by U.S. - Soviet Joint Commission on 1946.4.18," DSB 16(1947.1.26) : 173. 제임스 I. aoxmfpdl, 앞의책, 109쪽에서 재인용.

51) SWNCC 메모, 1946.5.22, FRUS 1946, VIII, 680-681 ; Walter Bedell Smith to Byrnes, 1946.5.18, ibid., 680 ; Borton to Williams, 1946.5.21, 국무성기록, 740.00119 Control(Korea)/5-2146.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12쪽에서 재인용.

52) Byrnes to Longdon, 1946.5.25, FRUS., VIII, 689 ; War to Langdon, 1946.5.25, 국무성기록, 740.00119 Control(Korea)/5-2546; NYT, 1946.5.24, p.12.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12쪽에서 재인용.

이승만은 6월 3일 (이미 4월 16일부터 천안, 김천, 광주등 전국을 순회) 전북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하겠다.”⁵³⁾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표면화 시켰고, 6월 29일에는 그 집행기관으로써 민족통일총본부(民族統一總本部)를 결성하였다.⁵⁴⁾

이에 반해 미·소공위가 무기 휴회된 후, 5월 하순부터 金奎植과 呂運亨을 중심으로 左右合作을 통한 통일정부수립에 대한 논의가⁵⁵⁾ 미국의 지원 아래 시작되었고, 6월 30일 하지는 좌우합작을 지지하는 특별발표를 하였다.⁵⁶⁾

1946년 7월 1일 군정장관 러치는, 미군정은 절반은 선거에 의해서 나머지 절반은 임명에 의한 남한과도입법의원(이하 입법의원이라 줄임)의 창설을 후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입법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며 항구적인 정부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⁵⁷⁾

이러한 좌우합작 움직임에 대해 이승만은 직접 김규식 및 하지에게 찬탁,용공이라고 매도하는 한편, 좌우합작 분쇄를 위한 계몽선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주 애국단체대표 수백명을 모아 놓고 시국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좌우합작 분쇄활동을 계속하였다.⁵⁸⁾

53) 서울신문, 1946.6.4.

54) 서울신문, 1946.6.30. 민족통일총본부 총재는 이승만 부총재는 김구였다.

55) Benjamin Weems, “Behind the Korean Elections,” Far Eastern Survey 17(1948.6.23) : 143 ; Lee,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p.141 ; Kim, Divided Korea, pp.28-29.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17쪽에서 재인용.

56) 서울신문, 1946.7.2.

57) NYT. 1946.6.22 ; NYT. 1946.7.2, p.17.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17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6월 들어 군정청의 남조선 과도정부로의 개칭 및 한국화으로써 단정수립의 가능성은 높아만 갔다.

58)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290쪽. 그러나 이승만은 신문기자회견(서울신문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가 정식으로 제청되어 입법의원을 위한 선거가 공고되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과도입법의원 계획안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 계획안은 미·소공위가 휴회되고 이승만이 단독정부수립을 요구한 뒤 곧바로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의혹에 대해 미군정은 입법의원 선거는 단지 한국화의 일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화의 시작이 아니라 1945년 가을에 시작된-랭던(Langdon)이 국무성에 제출한- 단독정부 계획안의 마지막 과정이었다.⁵⁹⁾

10월 4일 김규식·여운형의 좌우합작위원회는 입법의원의 조기구성에 찬성한

1946.7.2) 등에서는 계속 김규식의 좌우합작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59) 브루스 케밍스(Bruce Cummings),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1986, 92쪽.

그 계획안(신탁통치의 대안)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 (1) 사령관은 김구에게 군정내에 몇몇 정치그룹을 대표하는 협의체를 구성케 하여 한국의 정부형태를 연구하여 마련할 것과 행정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지시한다. 군정은 그러한 위원회에 대하여 모든 편의와 조언과 운영자금을 제공한다.
- (2) 행정위원회를 군정과 통합시킨다. (급속히 전 한국의 조직으로 수립된다.)
- (3) 행정위원회는 군정을 계승하여 과도정부로 되며, 사령관에게는 거부권과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인 감독과 고문의 임명권만을 남겨둔다.
- (4) 나머지 관련 3대국(소·영·중)에 대하여 미국인 대신에 동 행정위원회에 감독관과 고문의 일부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한다.
- (5) 행정위원회는 국가수반의 선거를 실시한다.
- (6) 선출된 국가수반은 새로이 정부를 재조직하여 외국과 조약을 맺으며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제정하는 한편, 한국은 국제연합에 가입한다.

이러한 변화과정의 어디쯤에선가 아마도 (4)와 (5)의 중간쯤에서 소련측과 양군 철수 및 행정위원회 권한의 고령국 지역까지의 확대에 관한 협정을 조인한다. 그러나 만일 소련측의 참여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38도선 이남의 한국에 대해서만이라도 동 방안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김국태 역, <<해방 3년과 미국>>, 돌베게, 1984.)

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덧붙였지만,⁶⁰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10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4단계의 간접선거를 실시하였고, 김규식과 여운형은 선거를 보이콧 하였다. 그 결과 이승만과 김구의 우익계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고, 친일분자도 상당수 당선되었다.⁶¹

그러나 입법의원 선거는 10월 항쟁기간 동안에 실시되었고, 너무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입법의원 선거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⁶² 하지의 정치고문 번스(Bunce)조차 한 사신(私信)에서 이번 선거는 '고무도장사건'이라고 하였다.⁶³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통해 한국의 정치무대에 중도파(좌우합작파)라는 대안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김규식·여운형 그룹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하지는 이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입법의원 중에서 미군정이 임명하게 되어있는 나머지 45명을 많은 수의 중도인사들로 선택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사실에 대해 이승만과 극우계열은 하지를 맹비난하였다.⁶⁴

60) 김규식, 여운형이 내건 조건. 첫째, (입법의원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제거, 둘째, 친일분자의 입후보자 제외, 셋째, 입법위원의 국가적 권위 인정, 넷째,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관찰 및 감독을 위한 조항 등. (출처.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61) Langdon to Byrnes, 1946.11.3, 14, FRUS 1946, VIII, 763, 767 ;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189.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23쪽에서 재인용.

62) Robinson, 'Betrayal of a Nation,' p.176. 브르스 커밍스, 앞의책, 93쪽에서 재인용.

63) Bunce to Martine, 1947.2.2, 국무성기록, 895.00/2-247.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23쪽에서 재인용.

64)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186 ; Henderson, Korea, p.153 ; Langdon to Byrnes, 1946.11.24. FRUS 1946, VIII, 770 ; Langdon to Byrnes, 1946.12.5, 27, ibid., 773-774, 780-781 ; "Korea : A Chronology of Principal Events, 1945-1950," World Today 6(1950.8) : 321. 제임스 I. 매트

하지가 김규식 등 중도파 세력을 지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은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여론화 한다는 명목으로 12월 2일 미국으로 향발하였다.⁶⁵⁾

그러나 이승만의 대변인 격인 임영신(任永信)은 비록 아무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미 6개월 전부터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⁶⁶⁾ 따라서 이 시기 이승만이 도미한 실제 이유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미국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였다.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위와 같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1947년 1월 11일 미군정은 미·소공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민족통일본부, 독립촉성국민회 등 우익 35개 단체 대표들은 미·소공위의 협의대상이 되기 위하여 미·소공위 5호 성명에 서명한 사실을 취소한다고 선언하였으며, 민족분열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좌우합작위원회의 해체를 결의하는 등 반탁의 기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1월 24일에는 임정계를 중심으로 반탁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⁶⁷⁾

민전(民戰) 등 28개 좌익단체들은 미·소공위의 재개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3상 결정을 반대하는 개인은 물론 정당단체는 미·소공위의 협의대상에서 끝까지 배제함으로써 진정한 통일과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⁶⁸⁾

한편 이승만의 도미중에 독립촉성회본부는 김구의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추진회를 구성하여 3월 3일 임정봉대식(臨政奉戴式)을 거행하

레이, 앞의책, 124쪽에서 재인용.

65) 조선일보, 1946.12.3.

66) 서울신문, 1946. 12. 4.

67) 송남헌, 앞의책, 341-344쪽.

68) 조선일보, 1947.1.16. 경향신문, 147.1.16. 서울신문, 1947.1.18.

였다.⁶⁹⁾ 이에 당황한 이승만은 일정을 앞당겨 재빨리 귀국하였고, 4월 27일의 귀국환영대회 연설에서 “미정책의 전환에 따라 우리가 미군정과 합작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대한임정의 법통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이 문제는 보류해 두어야 될 것이다.”⁷⁰⁾ 라고 하여 1945년 10월 16일 환국 이래 견지해 왔던 임정 지지의 태도를 파기하였다. 이것은 임정이 그의 단정수립에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위가 개막되자 이승만과 김구는 ‘신탁통치’에 대한 해석과 ‘민주’에 대한 정의가 해명되지 않는 한 공위협정에 참가를 유보한다는 공동질의서를 미·소공위에 전달하였고,⁷¹⁾ 5월 22일 공위 미측 수석대표 브라운(Albert S. Brown)은 미·소공위의는 임시정부수립안에 국한하여 협의할 것이라는 합의를 발표하였다.⁷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익진영의 반탁투쟁위원회는 미·소공위 방해활동을 계속하였다.⁷³⁾ 자치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은 진실된 것이었지만 극우보수계는 사실상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신탁통치 이슈를 이용하고 있었다. 공위 미측 수석대표 브라운과 이승만의 면담에서 이승만은 미국이 공위에 참석하면 한국에서는 합작정부가 궁극적으로 탄생할 것이며, 이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정권장악은 보장될 것이라고 통렬히 대꾸했다.⁷⁴⁾

69)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290-291쪽. 이것은 미군정에 대한 임정의 두번째 도전이었다.

70) 서울신문, 1947. 4. 29.

71) 동아일보, 1947. 5. 23. 조선일보, 1947. 5. 23.

72) 서울신문, 1947. 5. 25. 조선일보, 1947. 5. 25.

73) 조선일보, 1947. 5. 25. 동아일보, 1947. 5. 25.

74) Langdon to Marshall, 1947. 5. 21, FRUS 1947, VI, 646-647 ; Rhee to MacArthur, 1947. 5. 23, Private Correspondence, VIP file, folder 43, BOX 9, RG 10, MacArthur Papers.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43쪽에서 재인용.

6월 7일 공동위원회는 협의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소련측은 공동위원회에 대한 지지를 서약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모든 정당들과의 협의를 수락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친일분자들을 임시정부에서 양국의 권한으로 제거하는 문제를 자문서의 한 조항으로 포함시키자는 소련의 제의를 '그 원칙의 건전성'이란 이유를 근거로 수락했다. 협의대상자로서의 신청마감일은 1947년 6월 23일이었다.⁷⁵⁾

이에 반해 반탁운동진영은 6월 23일을 기해⁷⁶⁾ 전국 각지에서 반탁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계속해서 미·소공위 해소 운동을 벌여나갔고 6월 24일에는 일단의 극우파들이 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단에게 돌과 오물을 던지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스티코프는 이에 즉각 항의했으나 하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⁷⁷⁾ 또한 7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5일간에는 극우당들이 남한전역에서 투표를 통하여 반탁민족대표를 선출하는 등 미·소공위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⁷⁸⁾

한편 이 시기 조선신문기자회는 임시정부의 정체 등에 대한 가두 여론조사(7월 3일 서울 중요지점 10개소, 2459명 대상)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⁷⁹⁾

75) Langdon to Marshall, 1947.6.1, 4, 6, 7, 9, 11, FRUS 1947, VI, 658-663, 665-673, : NYT, 1947.6.1, p.18 ; NYT, 1947.6.2, p.3 ; NYT, 1947.6.3, p.10 ; NYT, 1947.6.5, p.18 ; NYT, 1947.6.8, p.27 ; George C. Marshall, "Hope Expressed for Early Provisional Government for Korea," DSB 16(1947.6.22) : 1249.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43-144쪽에서 재인용.

76)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291쪽 ; 서울신문, 1947.6.24 ; 동아일보, 1947.6.25.

77) NYT, 1947.6.17, p.13 ; NYT, 1947.6.24, p.17 ; NYT, 1947.6.25, p.20.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47쪽에서 재인용.

78)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291쪽.

79) 조선일보, 1947.7.6. 이 여론조사결과 발표 한달 후(8월 10일) 이승만의 주도하에 조선신문기자협회가 탄생한다.

〈표 1〉 가두 여론조사 결과

| | |
|-----------------------------------|---|
| 1. 6월 23일 반탁 테러사건은? | (1) 독립의 길이다: 651표(26 % 강) (2) 독립의 길이 아니다: 1736표 (71 % 약) (3) 기권 : 72표 (3 % 약) |
| 2. 미·소공위와의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정당, 사회단체는 ? | (1) 있다 : 1787표 (72 % 강) [한민당 (1227표) 한독당 (922표) 독촉국민회 (309표) 남로당 (174표) 대한노총 (91표) 광청 (30표) 건청 (19표) 전국노동자평의회 (14표) 민족주의민주전선 (9표)] (2) 없다 : 341표 (14 % 약) (3) 기권 : 331표 (13 % 강) |
| 3. 국호는 ? | (1) 대한민국 : 604 표 (24 % 강) (2) 조선인민공화국 : 1708표 (70 % 약) (3) 기타 : 8표 (1 % 약) (4) 기권 : 139표 (4 % 강) |
| 4. 정권형태는 ? | (1) 종래제도 : 327표 (14 % 강) (2) 인민위원회 : 1757표 (71 % 강) (3) 기타 : 262표 (10 % 강) (4) 기권 : 113표 (3 % 약) |
| 5. 토지개혁방식? | (1) 유상몰수 유상분배 : 427표 (17 % 강) (2) 무상몰수 무상분배 : 1673표 (68 % 강) (3) 유상몰수 무상분배 : 260표 (10 % 강) (4) 기권 : 99표 (5 % 약) |

* [자료 : 조선일보, 1947. 7. 6일자에서 발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약70%가 우익반탁 진영을 미·소공위와의 협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국호는 조선인민공화국, 정권형태는 인민위원회,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하고 있어 당시 민전(民戰)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극우 반탁진영이 왜 남한 단독정부 수립운동으로 나아가야만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시기 신탁통치와 소련과의 협상에 반대하는 이승만의 캠페인은 그 절정에 도달한다. 이승만은 하지와의 회견에서 자신과 그 지지자들은 새로이 수립될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위원회가 그 탄생을 주도한다 해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드디어 7월 9일에는 한 극력 극우분자가 합작위원회에서 우파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여운형을 암살했다.⁸⁰⁾ 이제 앞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지 않고는 이승만에 반대하거나 공동위원회와의 협조를 주장할 수 있는 한국지도자는 거의 없게 되었다.⁸¹⁾

8월 11일 이후 미군정의 대대적인 좌익계 검거사건에 대해 소련측은 “모스크바 결정과 공위 업무를 지지해온 남한의 좌익 요인의 탄압은 공위사업을 방해하는 처사”⁸²⁾라고 격렬하게 비난하였고, 미국측은 소련측의 비난에 대해서 “남한

80) 여운형은 당시 좌우합작위원회 좌익측대표 이외에도 민족주의 민족전선 의장, 근로인민당 당수였다. 여운형을 살해한 韓智根은 宋鎮禹 살해범 韓賢宇(당시 현직경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서울신문, 1947.7.20. 동아일보 1947.7.25. 조선일보, 1947.7.25.)

81) Hodge to Marshall, 1947.7.17, FRUS 1947, VI, 708-709 ; Jacobs to Marshall, 1947.7.19, ibid., 709-710 ; Jacobs to Marshall, 1947.7.31, 국무성기록, 895.00/7-3147 ; Jacobs to Marshall, 1947.8.6, ibid., 895.00/8-647 ; NYT, 1947.7.17, p.7 ; The Nation, 1947.9.6, pp.228-229.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49쪽에서 재인용.

82) 경향신문, 1947.8.22, 서울신문, 1947.8.23, 조선일보, 1947.8.23.

정부의 운영에 간섭을 기도하는 행위”⁸³⁾라고 응수하였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유지되던 미·소공위 회의마저도 실질적으로 끝나게 됨으로써 남한 정국은 단정 수립을 위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UNTCOK 성립의 내적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스크바 협정 이후 남한의 단정세력인 이승만과 한민당은 표면적으로 ‘신탁통치안 결사 반대’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통일정부 수립을 전면적으로 방해하였고, 미군정과 합세하여 남조선국민대표 민주의원, 남한과도정부수립,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 등을 통하여 단정수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갔다. 동시에 미군정은 - 한국민들의 열망을 뒤로한 채 - 모스크바협정 지지세력을 철저히 탄압·분쇄해 나갔으며, 단정·분단세력을 옹호·육성함으로써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UNTCOK 결성의 내·외적 배경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전후 한국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결정은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협정으로 명문화되었고 동협정의 내용에 따라 한국의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21일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단정·분단세력들은 ‘신탁통치’조항을 구실 삼아 미·소공위에 대한 방해공작을 수행하였고, 미군정은 1945년 11월 17일자 랭던의 건의안에 따라 남한단독정부 계획안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과 국내의 단정·분단세력인 이승만 진영과 한민당은 표면상 부분적인 마찰을 빚긴했으나, 사실상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갔다.

1차 미·소공위 결렬 후, 미군정은 모스크바협정 지지세력인 좌익계열을 전면

83) 동아일보, 1947.8.24, 조선일보, 1947.8.24.

적으로 탄압·검거하는 한편, 제2차 미·소공위 사이의 공백기간을 좌우합작을 통해 메꾸어 나갔는데 이것은 한국민들의 통일 열망을 여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계속하여 미군정은 남한에서 '남한 과도정부 수립', '남한 과도입법의원 창설' 등을 통하여 단정수립안을 진행하는 한편, 1947년초 소련측에 미·소공위의 재개를 요구하였다. 소련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여 미·소공위의 재개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단정·분단 세력들은 제1차 미·소공위 때보다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대담한 방해 활동을 수행하였다. 미군정은 이러한 방해 활동을 제지하지 않았고, 미국은 제2차 미·소공위 기간 중에도 언론을 통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 예정설을 유포하였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미·소공위는 완전히 결렬되었다. 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임시정부에 참여할 협의대상의 선정 불일치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외적 요인이 미·소공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고 따라서 단정과 분단은 실제화 되었다. 그러나 단정·분단 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한국민들의 강력한 통일열망 앞에서 미국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통한 신탁통치 방식을 보류할 수 밖에 없었고, 한국문제는 미국에 의해 그들의 합법적 다수가 보장된 UN 으로 이관되었다.

2. UN에서의 결성 경위

한국문제의 UN이관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살펴보면, 미국은 미·소공위가 휴회되기 전인 8월 초 이미 한국문제를 UN에 회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

마련하였다.

즉 1947년 8월 2일경 동북아국부국장 존 앨리슨 (John M. Allison)은 다음과 같은 최종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소련이 8월 5일 이전에 공동위원회의 협상을 결렬시키면 미국은 외상 회담의 특별소집을 요구, 각 점령지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UN이 감시하는 자유선거를 제의한다.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미국은 이 문제를 UN에 넘겨 남한 단독으로만 실시한다. 둘째, 소련이 8월 5일 이후에도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마샬은 양국대표단으로 하여금 한국의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그 동안의 진전을 요약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동시에 미국은 남한에서 첫번째 경우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며 한국문제를 UN의 결의사항으로 회부한다. 셋째, 소련이 미국의 어느 정책안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미국은 남한에서만 단독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한국의 통일 문제는 1947년 9월 10일 UN으로 이관한다.”⁸⁴⁾이로써 미·소공위의 결렬은 엄밀히 말해 미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한국문제의 UN이관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예정된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앨리슨 계획안 중 단지 세번째 만이 유보되었을 뿐이었다.

이리하여 1947년 9월 17일 미국대표는 사전통고도 없이 ‘한국독립문제’를 제2차 UN총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국무장관 마샬은 총회에서 한국문제의 UN상정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다.⁸⁵⁾

84) John M. Allison 메모, 1947.7.29, FRUS 1947, VI, 734-735 ; *ibid.* ; Ad-hoc Committee to SWNCC, 1947.8.4, *ibid.*, 735-741.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50-151에서 재인용.

85) 릴랜드 구드리치, <유엔에서의 한반도문제 처리과정> <<분단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1983, 378쪽.

한국문제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로미코(Andrei Gromyko) 소련외상은, 이 문제는 전쟁과 연결된 것으로 강대국들이 특별한 방법 즉 모스크바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⁸⁶⁾

이 과정에서 소련측은 “UN 헌장 35조 2항과 107조⁸⁷⁾를 인용, 미국측의 안건은 거론될 수 없으며, UN의 일차적 임무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있는 것이고, 전에 적국에게 점령되었던 영토의 처리문제를 다룰 수 없다.”⁸⁸⁾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측은 “UN이 근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헌장 11조 2항⁸⁹⁾에 표현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한국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107조는 제기된 문제에 적용될 수 없다”⁹⁰⁾고 주장했다.

86) 릴랜드 구드리치, 위의책, 379쪽.

87) 헌장 107조는 다음과 같다. “본 헌장은 어느 조항도, 본 헌장에 조인한 국가에 대해 2차대전 중 적국이었던 나라와 관련하여, 전쟁의 결과로 각 정부가 수락 또는 인정한 행위를 무효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88) U.N. Document, A/C. I/195 and 218. 조승순, <<한국분단사>>, 형성사, 1982, 148쪽에서 재인용.

89) 제11조 2항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UN의 회원국,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 2항에 부합되는 비회원국이 상정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관련당사국 및 당사국들,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양쪽에 다 건의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 중 행동이 요구되는 문제는 총회의 토의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90) U.N. Official Document, Verbatim Record, Second Session, 1947년, 본회의, 제1권, p.286. 조승순, 위의책, 148쪽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측의 주장은 1945년의 미군 진주시에 맥아더 사령부의 포고 제 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의 내용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 . . 일본제국정부의 일본대본

그러나 투표결과 12대 2로 운영위원회는 의제포함을 총회에 건의했고, 결국 총회는 9월 23일 찬성 41, 반대 6, 기권 7로 이 건의를 채택하기로 결정, 한국 문제를 정치위원회 (제 1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토록 했다.⁹¹⁾

9월 26일, 총회투표 사흘 후에 미소공동위원회 소련대표단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점령군이 1948년 초에 동시에 철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그들 자신의 정부를 아무런 외부 개입 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미국대표단은 이러한 제안은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⁹²⁾ 공동위원회 미국대표 브라운은 한국의 운명은 이제 UN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소련의 제안에 응답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대답했다.⁹³⁾

이러한 사실은 이승만에게는 놀라운 것이었다. 우익쪽에서도 그들 스스로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탁통치안 폐기와 아울러 외국군 철수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외국군 철수라는 종래의 주장을 갑자기 변경했다. 그는 소련군은 즉시 철수해야 하고, 그 반면에 북한군을 무장해제 시키거나

영이 조인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했다. 조선인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 . .”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미국은 명백하게 적국의 일부로 한국을 점령한다고 포고 제일성에서 표명했고 이런 점에서 한국문제의 UN이관은 미국의 정책의 본질을 표출한 것이며, 결국은 ‘제국주의 의도의 관철’이라는 주장을 가능케하고 있다.

91) U.N. Official Document, Verbatim Record, Second Session, 1947년 본회의, 제1권, p.299. 조승순, 앞의책, 150-151에서 재인용.

92) NYT, 1947.9.27 ; Soviet News, 1947.10.2. 조승순, 앞의책, 150쪽에서 재인용.

93) Jacobs to Marshall, 1947.9.26, FRUS 1947, VI, 816-817 ; NYT, 1947.9.27, p.1.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61-162쪽에서 재인용.

그렇지 않으면 남한군이 훈련되고 장비를 갖추는 때 까지 미군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언명했다.⁹⁴⁾

UN에서는 워렌 오스틴 (Warren R. Austin)이 미국상주대사의 자격으로 1947년 10월 17일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신속한 국제적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계획안은 단지 두 가지 점에서만 9월 18일자 국무성 초안⁹⁵⁾과 차이가 있었다. 첫째, 이 결의안은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총선거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둘째, 임시정부의 수립 후 미·소 양군의 철수를 규정하고 있었다.

소련은 위의 미국측 결의안에 대하여 2개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 중 하나는 남북한으로부터 선출된 대표들을 초청하여 한국문제의 토의에 참가시키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1948년 초까지 점령군을 동시에 철수시킴으로써 한국정부의 수립을 한국민에게 일임하자는 것이었다.⁹⁶⁾

그러나 제1위원회는 미국측 수정안을 승인하는 한편 소련측 원안을 거부하였는데, 그로미코는 “만약 총회가 한국민의 대표를 토의에 참석시키지 않고 UN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 한다면 소련은 위원단의 활동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94) NYT, 1947.9.28, p.1. 조승순, 앞의책, 150-151에서 재인용.

95)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UN감시하의 자유선거를 6개월 내에 실시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인구비례에 따라 남한이 2:1로 우세하게 구성될 임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임시정부의 관리를 임명한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선거감독과 선택의 자유촉진, 그리고 총회에 대한 선거과정의 보고 등을 위해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COK)”의 창설제안이다. (출처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57쪽.)

96) Austin to Lie, 1947.10.17, FRUS 1947, VI, 832-835 ; Warren R. Austin,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DSB 17(1947.10.26) : 820-835 ; NYT, 1947.10.18, p.14.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63쪽에서 재인용.

선언하였다.⁹⁷⁾

이 과정에서 인도대표는 미국측 수정안이 점령국에 의한 선거실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논박하면서, 이 절차를 따르는 한 틀림 없이 지역단위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도대표는 임시위원단이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업무를 위임받아야 한다고 제의했고 점령국에 의한 선거실시를 배제하자는 인도측의 수정안은 결국 찬성 34, 반대 0, 기권 4 로 가결되었다.⁹⁸⁾

이 시기 국내의 이승만의 활동은 조속한 선거를 서두르고 있었으며 UN감시하의 선거는 원하지 않고 있었다. 이같은 그의 태도는 G-2 weekly summary에 잘 나타나 있다.

“ . . . 이승만과 그 일당이 통일한국의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UN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며, 그는 선거를 서두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연기와 감시로 그가 승리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UN감시자들과 함께 선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한다면 이승만은 모든 책임을 지는 미국과 함께 전폭적인 개인적 권위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속에는 이승만이 소련에 의해 주장되는 바와 같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내의 어떤 미국인들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10월 29일 미국 고위급 관리와의 회담에서 이승만은 지금 당장 UN이나 그 밖의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남한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고, 만약 총선이 지금 실시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유혈사건이 터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승만은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해산시키고, 감옥에 넣어, 제거

97) U.N. Official Record : Second Session, First Committee, p.281. 릴랜드 구드리치, 앞의책, 380쪽에서 재인용.

98) 릴랜드 구드리치, 앞의책, 381-382쪽.

해 버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이야기는 모순에 가득차고 허풍스러웠다. 그것은 그가 그의 정치적 야망에서 좌절과 공포의 지점에 도달하였고 그가 건강하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었다.”⁹⁹

이러한 이승만 계열의 움직임은 1947년 가을 서울로 부터의 보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할 가능성은 미국의 원조 여하에 관계 없이 극히 희박한것으로 예견되었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승만이 진정한 자유선거가 실시되면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나머지 선거의 승리를 조작하기 위해 경찰과 우익청년단체에 의존하려 하였고, 반면 10월말이 되면 좌익계열의 도전은 임의체포와 장기적 감금 등의 수법으로 거의 제거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지는 워싱턴 행정부에 대해 단독선거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⁰⁰

이 시기 UN에서 미국과 소련은 각각 UNTCOK의 결성 제안과 한국대표의 UN토론 참석 및 미·소점령군 동시철수 제안으로 대립하였다. 국내의 단정·분단세력인 이승만 세력은 UN개입 이전에 경찰과 청년단체에 의존, 조기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미군정은 좌익의 합법적인 조직기반을 송두리채 파괴시킨 후 단독선거의 여건이 성숙하였다고 판단, 본국에 선거실시를 요망했다. 그러나 미국은 UN에서의 상황진전에 따라 UN에 의한 선거의 실시를 확정하였다.

9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G-2 WS #122, HQ, USAFIK G-2 Weekly Summary(이하 G-2 W/S로 줄임) 권4, 1990, 440-441쪽.

100) Jacobs to Marshall, 1947.10.21, 국무성기록, 740.00119 Control (Korea) /10-2147 ; Jacobs to Marshall, 1947.10.24, ibid., 895.00/10-2447 ; Jacobs to Marshall, 1947.10 10, FRUS 1947, VI, 830 ; Hodge to JCS, 1947.11.3, ibid., 852-853.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66쪽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나타나듯 미국과 미군정과 국재의 단정·분단세력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1월 5일 UN 제1위원회는 미국의 초안을 수정없이 찬 46, 반 0, 기권 4 로 최종적으로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소련,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6개국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대표의 불참이 현장 조문과 민족자결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¹⁰¹

이러한 과정에서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국민당), 엘 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그리고 시리아로 구성되었고, 우크라이나도 지명되었으나 참여를 거부했다. 이 UNTCOK의 구성국가는 미국대표 덜레스에 의해 설명 없이 구성되었다.¹⁰² 9개 회원국 중 캐나다, 호주, 중국, 프랑스, 엘 살바도르, 필리핀은 모두 미국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단지 시리아와 인도만이 미국의 정책목표 추구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었다.¹⁰³ 따라서 표면적으로 미국은 UNTCOK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계적 다수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1월 14일 (UN) 총회는 이미 정치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건의된 바 있는 미국의 초안을 찬성 43, 반대 9, 기권 6으로 채택했다. 소련진영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총회에서 소련측 제안은 34대 7, 기권 6으로 부결되었다. 동시에 호주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이 결성되었다.¹⁰⁴

101) U.N. Official Record,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Second Session, 1947, p.305. 조승순, 앞의책, 155쪽에서 재인용.

102) 존 할리데이, 앞의책, 96쪽.

103) NYT, 1947.11.5, p.26 : Leon Gordenker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 The Politics of Field Operations 1947-1950, p.31.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67쪽에서 재인용.

이시기 국내의 우익주의자 그룹, 대개는 이승만 추종자들로 부터 KiLa(남조선 과도입법의원)선거법 아래 남한에서의 선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도록 끊임 없는 압력이 있었고, 11월 12일 이승만이 뉴욕에 있는 임영신에게 보낸 무선전보는 이승만이 현재 임시정부(남조선과도정부)를 제거하고, UN감시하의 본선거에 앞서 그가 지배할 또 다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조기총선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⁰⁵

군정장관 윌리엄 딘(William F. Dean)소장은 이승만을 침묵시키기 위해 한국에서의 자치정부 수립은 UN임시위원단의 도착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고, 드디어 하지는 12월 7일 가까운 장래에 선거가 실시될 것이며, 그러나 이것은 UN의 감시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¹⁰⁶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에 이관하게 된 원인은 미·소공위의 실패에 따른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었다. 즉, 미국은 모스크바협정에 의한 전 한국 신탁통치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국내의 정치세력 분포상 불가능함을 인식하였고, 따라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안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UN의 개입을 필요로 하였다. 이것은 결국 모스크바협정의 일방적인 파기에서 오는 비난과 국내의 통일지향 세력

104) U.N. Official Document, Verbatim Record of General Assembly, Second Session, 1947년 본회의, 제2권, p.829. 조승순, 앞의책, 156쪽에서 재인용.

105) G-2 WS #114, G-2 W/S 권4, 488-489쪽.

106) Langdon to Marshall, 1947.11.29, *ibid.*, 865-866 ; Langdon to Marshall, 1947.11.17, 19, *ibid.*, 859-860, 863-864 ; Hodge to Marshall, 1947.12.2, *ibid.*, 866-867 ; Jacobs to Marshall, 1947.11.11, 국무성기록, 895.01/11-1147 ; NYT, 1947.11.29, p.8.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67-168쪽에서 재인용.

들의 반발을 상쇄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도를 일부나마 관철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국내의 단정·분단세력들은 UN감시하의 공정한 선거에서 패배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경찰과 청년단체에 의존한 남한만의 조기선거를 미군정에 요구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1947년 8월 3일자 앨리슨 계획안의 마지막(세번째안)과 일치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좌익계열의 합법적인 조직기반을 철저하게 붕괴시킨 후, 본국에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UN의 개입에 의한 선거실시라는 기존의 방침과, UN내 UNTCOK창설 계획의 진전에 따라서 국내의 단정·분단세력을 진정시킬 것을 미군정에 지시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미국, 미군정, 국내의 단정·분단세력인 이승만 진영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연관을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UN에서의 UNTCOK의 결성 과정은 UN관례와 조항이 무시된 일방적인 미국의 힘의 관철 과정이었다. 소련측의 제안인 한국인 대표 UN토론 참석문제와 미·소 점령군 동시철수 문제는 모두 UNTCOK에 의한 선거 이후로 미루어져 미국의 최종수정안에 포함되었고, UNTCOK의 9개 구성국가는 미국에 의해 아무 설명 없이 제안되어 통과되었다. 지명된 9개국 중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이에 반대하여 참여거부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소련은 한국대표의 참여 없이 결정된 UNTCOK활동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가장 핵심 사항인 선거실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UN은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였다. 미국안은 UNTCOK의 창설에도 불구하고 각기 남·북점령국에 의한 분리선거를 기도하였지만, 인도의 제안으로 선거는 전 한국에 걸쳐서 UNTCOK에 의해 주관되는 사상으로 변경되었다.

요컨대 1947년 11월 14일 2차 UN총회에서 결정된 UNTCOK의 결성은, 비록 미국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 할지라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전 한국에 기

반한 총선거와 선거주관의 책임을 UNTCOK가 위임받음으로써 단독분리 선거를 기도한 미국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데 일단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3. 결성 취지 및 목적

위와 같이 UNTCOK는 미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력 속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또한 소련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미국의 일방적 강요는 이미 남북한의 분단상태를 전망하는 것이었다.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안에 의거하여 (UN)총회는 한국독립의 달성을 위한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UNTCOK는 선거의 감시는 물론, 직접선거를 실시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며, 정부수립을 위해 선출된 대표들에게 조언하거나, 여러가지 실무적인 협조를 제공하도록 위임받았다. 선거는 늦어도 1948년 3월 31일까지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었다.

특히 위원단은 2개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하나는 선출된 한국대표들로 하여금 총회가 장차 한국문제를 토의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정부수립에 필요한 보편적인 기준을 한국측에 제시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UNTCOK의 감시하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국회를 구성, UNTCOK와 협의하여 국군을 창설한 후 군정당국으로부터 정부의 모든 기능을 인수한 후, 가능한 빨리 즉 90일 이내에 모든 외국군대를 완전히 철수시키기 위하여 점령당국과 협의하도록 한다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UNTCOK는 그 성과를 계속해서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태의 진전에

따라 소총회와 협의하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독립을 준비하는 과도기에는 총회결정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에도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¹⁰⁷

한편 2차 UN총회 2차회기 중에 한국문제를 위하여 설치된 소총회(Interim Committee)는 미국의 의도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UN헌장 제11조 2항에는 “· · · 그러한 문제들 중 행동이 요구되는 문제는 총회의 토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면 UNTCOK 설치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제의 규칙을 피하기 위하여 소총회를 설치, UNTCOK의 협의기관으로 삼았다. 바로 이 소총회가 1948년 2월 남한 단독선거 실시 결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소총회를 설치하게 된 미국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UNTCOK는 남한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제안으로 결성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창설 취지는 전 한국을 기반으로 한 한국 독립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변경되었다. 비록 이 시기 미국의 강력한 힘이 UN 제국가에 관철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UN의 이름하에 한국을 분단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UN은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UNTCOK는 제2차 UN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독립된 한국의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총선거의 실시를 위해 결성되었다.

107) 릴랜드 구드리치, 앞의책, 381쪽

Ⅲ장. UNTCOK의 활동과 성격

위와 같은 취지와 목적하에서 결성된 UNTCOK의 활동은 편의상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내한 부터 UN소총회 결정까지의 시기를 들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 UNTCOK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UN소총회에서 남한 단독선거 결정 이후 5·10선거까지의 시기를 들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UNTCOK는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한 정치지도자 회담을 지원하였다.

본 고에서는 UNTCOK의 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구성원의 신상 및 성향을 추적함으로써 내한 이후 전개되는 UNTCOK 활동의 한 단서를 발견하고자 하며, 이 같은 단서를 토대로 UNTCOK의 활동을 각각 남·북한 총선거 추진기(내한-소총회 결정)와 남한 단독선거 감시기(소총회 결정 이후-5·10선거)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UNTCOK의 활동을 소총회의 결정을 전후로 하여 두 시기로 구분하는 이유는 그것을 전후로 하여 각각 총회 위임 결정기와 소총회 결정 수행기로 그 성격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1. UNTCOK 구성원의 신상과 그 성향

한국에서 UNTCOK가 무엇을 했으며 그 활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위해 우리는 우선 이 위원단의 구성원들은 어떤 나라의 어떤 경력의 사람들로 선임되었는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2>는 이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표2>에서 보듯 UNTCOK는 네델란드를 비롯한 10개국에서 파견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을 많이 파견한 나라순으로 보면 중국(5명), 인도, 호주(각각 3명) 순이며 벨기에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2명씩이 참가하고 있다. 위원들의 나이는 30대에서 60대 중반에 이르는 연령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과 경력 또한 매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외교관, 법률가, 변호사, 교수, 회계사, 공무원, 언론 편집인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몇몇 사람의 예외가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구성원이 미국과 직·간접인 인연을 갖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2>에서 보듯 UNTCOK 구성원 가운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인물들이 미국 유학의 경험과 미국과 관련된 외교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점은 UNTCOK 구성원들의 성향을 단적으로 암시하는 예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에서 UNTCOK의 활동이 어떠한 한계와 성격을 갖을 것인가를 시사해 주는 좋은 단서라 할 것이다.

<표2> UNTCOK의 구성원별 신상명세서

| | 국명 | 성명 | 나이 | 직업 | 지위 | 경력 |
|---|------|---------------------------------|-----|---------|-----------------------|--|
| 1 | 네델란드 | 페트루스 슈미트 (Petrus J. Schmidt) | 40 | UN사무국근무 | 수석비서관. | 학사. 저널편집자. 1945 UN창설준비위원회 네델란드 대표. 1948. 6이한 |
| 2 | 〃 | 코어츠 비너츠 (Coert Binnerts) | 약50 | UN사무국근무 | 수석비서관. | 법학박사. UN본부영업부장. 페트루스 슈미트 후임(1948. 6. 4.). |
| 3 | 벨기에 | 마크 슈라이버 (Marc Schreiber) | 약35 | 법률가 | 법률고문관. 제3분과위원회 간사. | 2차대전전 정부관리. 전후 미국 뉴욕 콜롬비아대학에서 강의. 1948. 3. 18. 이한. |

| | 국명 | 성명 | 나이 | 직업 | 지위 | 경력 |
|----|-------|--------------------------------|-----------|--------------------|----------------------------------|--|
| 4 | 시리아 | 제키 자비 (Zeki Djaby) | 47 | 외교관 | 시리아대표. 제1분과위원회 의장. | 의학박사. 1941정부관리(시장). 1947 UNTCOK 시리아 대표. 1948. 2. 14. 이한. |
| 5 | 〃 | 유신 무길 (Yusin Mughir) | 26 | 외교관 | 시리아 교체대 표. 제3분과위 원회 위원. | 1945 문학석사. 1947 미국 워싱턴 에서 박사과정 중 교체대표로 선 발됨(1948. 2.). |
| 6 | 엘살바도르 | 미구엘 발레 (Miguel A. P. Valle) | 45 | 외교관 변호사 | 엘살바도르 대 표. 제2, 3분과 위원회 위원. | 박사. 1936 주미 엘 살바도르 외 교관. |
| 7 | 〃 | 유고 린도 (Hugo Lindo) | 32 | 법률가 시인 | 엘 살바도르 부대표. | 박사. 신문편집인. |
| 8 | 인도 | 메논 (K. P. S. Menon) | 51 | 정부 관리 | 인도대표. 상임의장. | 미술학석사(영국). 공직근무. 1945 샌프란시스코의 인도대표. 1948. 3. 19. 이한. |
| 9 | 〃 | 나일 (K. G. Nair) | 약40 전후 | 정부 관리 | 인도 부대표. | 1934년부터 메논수행. 1947 UNTCOK 서기국구성원으로 임명. 후에 인도 부대표로 임명. 1948. 3. 19. 이한. |
| 10 | 〃 | 바하들 싱(I. J. Bahadur Singh) | 34 | 법률가 | 인도 교체대표 | (영)석사. 1945상하이 총영사. 1947-1948. 3. 까지 주일 인도대사 비서로 재직. 1948. 3. 18. 메논의 후임으로 임명됨. |
| 11 | 중국 | 후쓰태(胡世澤) | 55 | 외교관 UN부사 무총장 | 사무총장. | 1919 외교관 생활. 1946 UN창설준 비위원. 1947 UN팔레스타인위원단 국제연합 대표. 1948. 3. 19. 이한. |
| 12 | 〃 | 추홍티(朱홍리) | 약35 | 교수 | 보좌비서관. | 1948 철학박사. 뉴욕거주. 1945샌프 란시스코회의 중국대표단. 1948. 3. 18. 이한. |
| 13 | 〃 | 리유완(劉馭萬) | 53 | 외교관 | 중국 대표. | 미국유학파(학사. 석사). 중·미문화 협회 회원. |
| 14 | 〃 | 왕궁싱(王恭行) | 38 | 전문 외교관 | 중국 부대표. 제1분과위원회 위원. | 미국유학. 학사. 미국거주. 뉴올리안 즈 영사. 1946 런던 UN총회, 1947뉴 욕 UN총회 중국대표. 1948. 1. 29. 중 국 부대표로 내한. |
| 15 | 〃 | 쑤류태(司徒德) | 42 | 공무원 | 중국부대표. 보 고서작성자. 제 2분과위원회위원 | 1931 학사. 중·미문화협회 회원. 1948. 2. 13. 중국 부대표로 내한. |

| | 국명 | 성명 | 나이 | 직업 | 지위 | 경력 |
|----|-----|----------------------------------|----|------------------|-------------------------------|---|
| 16 | 캐나다 | 조지 패터슨 (George S. Patterson) | 62 | 외교관 | 캐나다 대표. 제1,3분과위원회 위원. | 철학박사. 1946 주중캐나다 대사. 1947 재일본 연락기구 책임자. |
| 17 | 프랑스 | 장후이폴-봉쿠르 (Jean Paul-Boncour) | 56 | 외교관 | 프랑스 대표. 제1,2분과위원회 위원. | 학사. 프랑스 외무상의 조카. 1938 (전시)페루리마회의에서 미국대표 를 도움. 1943 주중프랑스 공사관 대표. |
| 18 | 〃 | 올리비에 마네 (Olivier Manet) | 39 | 외교관 | 프랑스 부대표 제1,2분과위원회 위원 | 학사. 1944-47 외무부 근무. |
| 19 | 필리핀 | 멜레치오 아란즈 (Melecio Arranz) | 60 | 정치가 | 필리핀 대표. 제3분과위원회 의장. | 박사. 1928 국회의원. 1945 원내총 무. 1948. 2. 3. 이한. |
| 20 | 〃 | 루피노 루나 (Rufino Luna) | 57 | 대 학 교 수 | 필리핀 교체대 표. 제3분과위 원회 의장. | 미국 미시간대학 법률학박사. 1940 내무차관. 아란즈 후임. |
| 21 | 호주 | 샤뮤엘 H. 잭슨 (Samuel H. Jackson) | 57 | 공직자 (회계 사) | 호주 대표. 제2분과위원회 의장. | 학사. 1947. 3. - 10. 주일오스트리아 사절. 1947. 10. 한국방문. 1948. 6. 이한. |
| 22 | 〃 | 제미슨 (A. B. Jamieson) | 미상 | 외교관 | 호주 교체대표 | 학사. 호주 포스트지 (Australia Post)의 편집자. 잭슨후임(1948. 6. 4일자.) |
| 23 | 〃 | 이안 밀러 (Ian F. G. Milner) | 38 | 외교관 UN근무 | 부수석비서관 주위원회 간사 | 1940 공무원. 1946 UN사무국 근무. |

[자료출처 :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에 관한 미국연락장교의 비밀보고서]

미 연락장교¹⁰⁸ 의 <비밀보고서>¹⁰⁹ 에는 이상의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은

108) 미 연락장교는 존 워커링준장으로서 그는 미군정에서 파견되어 UNTCOK와 미군정간의 연락책임을 맡았다.

UNTCOK 구성원 개개인에 관한 신상 명세서 외에도 이들 각자에 대한 개인별 코멘트가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건에 기초하여 UNTCOK 구성원 23명 개개인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성향을 밝혀 보고, 이들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이 결국 이들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을 구명해 보기로 한다. 편의상 <표2>에 나타난 나라와 인물 순서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슈미트(P. J. Schmidt) : 매우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1920-40년대 중반까지 신문사 기자 및 편집인으로 활동했으며 제2차대전 중에는 레지스탕트 운동에 참여하여 지하 저항신문의 편집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이 기간(1928-1931)에 사회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독립사회당' 의장(1931-1934)의 자리에 까지 오른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력으로 그는 1945년 8월 네델란드 대표로 선임되어 UN창설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47년 11월 UNTCOK 수석비서관(간사장)에 선임 내한 하였다.

슈미트에 대한 미 연락장교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반 부정반이다. '추진력있는 능력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과거 '공산주의자'였으며 "공산주의 동조자들에게 유리한 UNTCOK의 공식 기록물을 마음대로 이용해 고발당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¹¹⁰ 그러나 반미적인 활동을 한 패터슨(G. Patterson), 잭슨(S. Jackson) 등의 그룹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9) <비밀보고서>의 원 명칭은 'UNTCOK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로 영문표기는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비밀보고서>로 줄여 표기했다.

110) UNTCOK에 대한 미국연락장교의 비밀보고서 (이하 비밀보고서라 줄임). INCLOSURE No.8. Biographic Note on PETRUS JOHANNES SCHMIDT.

이 그룹의 노력을 좌절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긍정적인 인물로 보고있기도 하다.¹¹¹ 슈미트가 UNTCOK위원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채 1948년 6월 중도에 한국을 떠나게 된 원인이 바로 미 군정측의 이같은 복잡한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비너츠(C. Binnerts) : 비너츠는 슈미트의 후임으로 1948년 6월 4일 내한하였다.¹¹² 2차대전 당시 일본전쟁 포로생활(1942-1945)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는 UN이 창설되자 그곳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판매 책임을 맡아 본 영업 부장의 직을 갖고 있는 친미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슈미트의 후임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그의 친미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러한 그의 성향은 미 연락장교의 보고서에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를 가리켜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갖춘 우호적인 인물”이라고 호평했는가 하면 그는 “솔직, 개방, 성실한자”이며 그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임기동안 수석 간사로서 미 군정과 매우 협조적이고 미국에 우호적이었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¹¹³

3) 슈라이버(M. Schreiber) : 30대의 젊은 법률가로서 콜럼비아대학에서 법률과 논리학을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학자 출신이다. 한편 본국(벨기에) 사회민주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그는 자신이 옳다는 일에 대해서는 굽힐줄 모르는 소신파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격으로 그는 독선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그는 솔직하고 자유주의적 관점과 혁신주의적 경향의 성격 소유자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¹⁴ 그는 UNTCOK 제1분과 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었

111) 동책.

112)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81. Biographic Note on COERT BINNERTS, Principal Secretary, UNTCOK.

113) 동책.

으나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체로 객관적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역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이한(1948년 3월)한 점으로 보아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상정된다.

4) 자비(Z. Djaby) : 미국과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는 그는 1941년 다마스쿠스 시장을 거쳐 정당인으로 활동했는가 하면 한 때 아르헨티나 주재 시리아 대사를 역임할 정도로 당시 시리아 내의 대표적인 외교가 중의 한사람이었다.¹¹⁵ UNTCOK에서의 그의 활동은 미국측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 같다. 미 연락장교의 비밀 보고서에 그를 가리켜 '몽상가', '미국측에 비판적인 인물'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하면 '북한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로 보고 있는 듯한 여운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 일이며, 미국측에 반대하는 한국인(민족주의자)들과 잦은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활동과 태도로 그는 매우 반미적인 인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¹¹⁶ 결국 이같은 그의 반미적 활동과 성향으로 그 역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1948년 2월 한국을 떠나야 했다.¹¹⁷

5) 무길(Y. Mughir) : UNTCOK위원중 최 연소자(26세)이다. 워싱턴대학에서 학위과정(박사)에 재학 중 교체위원으로 선임된 그는 주위로 부터 인정받는 사회 활동가이자 외교관 지망생이었다. 그는 다소 공산주의에 경도된 좌익 사상을 품고 있었으나 공산당을 비판하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던 인물이었다.¹¹⁸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UNTCOK위원에 선임된 후 그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114)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3. Biographic Note on MARC SCHREIBER.

115)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7. Biographic Note on ZEIK DJABI.

116) 동책.

117) 동책.

서도 잘 나타난다. 즉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예컨대 38선을 경계로한 남북한 분리를 반대한 것이며 한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점 등은 다소 남다른 점이라 하겠다.¹¹⁹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교체위원의 경우 친미적인 인사로 대치된 것이 일반적인 예인 점을 고려할 때 유신 무길의 경우는 예외라 하겠다. 이 점은 당시 시리아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반미적인 입장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6) 발레(M. A. P. Valle) : 당시 남미 국가들의 성향이 그러하였듯 전형적인 친미 입장을 표명한 인물중의 한 사람이다. 워싱턴 주재 엘 살바도르 공사 비서관 생활(1936-39)을 “내 생애 최고의 시절”이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그는 친미적인 인물이었다.¹²⁰ 그의 성격은 남미인의 전형적인 기질인 다혈질에 감상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한편 패기와 용기가 결여된 인물로 평가되어 있다. 그의 한국에서의 활동은 단지 제2,3분과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별반 알려지지 않다.

7) 린도(H. Lindo) : 시인이자 법률가 출신인 그는 1948년 1월 엘 살바도르를 대표하여 UNTCOK위원에 임명되어 내한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리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논쟁점에 대해 분명한 자신의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¹²¹ 따라서 한국에서의 활동 역시 그의 분명한 입장이나 주장을 별반 찾아 볼 수 없다.

118)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8. Biographic Note on YUSIN MUGHIR.

119) 동책.

120)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6. Biographic Note on MIGULE ANGELA PENA VALLE.

121) 비밀보고서 INCLOSURE No.24. Biographic Note on HUGO LINDO.

8) 메논(K. P. S. Menon) : 메논은 본위원단의 상임의장이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였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한 마디로 그는 객관적 태도를 취하려는 입장이었다. “세련되고 지적이며 명료한 분석력과 유능한 동료에”로 의장에 선임된 그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측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대표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기본적인 입장은 소총회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지는 데 반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의 입장이 적어도 친미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¹²² 따라서 그는 미 연락장교의 비밀 보고서에서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혹평과 함께 “공상가와 상상가로서 일부 동료들로부터 간주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비난을 받게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온건하나 궁극적으로 친미적인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시 본위원회의 상임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채 1948년 3월 귀국의 길에 올라야 했다.

9) 나일(K. G. Nair) : 1934년 부터 메논을 수행하여 외교활동을 하였고, 처음에는 UNTCOK 서기국 구성원으로 내한하였으나, 인도 대표인 메논이 UNTCOK 상임의장으로 선출되자 인도 부대표로 승격되었다. 그는 메논의 의견을 존중하여 따랐고, 미군정은 그를 가리켜 “인도의 부대표라기 보다는 메논의 비서라는게 옳다.”¹²³ 라는 혹평을 하였다. 결국 그는 친미적인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1948년 3월 19일 메논과 함께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10) 바하들 싱(I. J. Bahadul Singh) : 1947년 부터 주일인도대사의 비서로 재직 중 메논의 후임으로 선발(1948. 3. 18)되었다. 미 연락장교의 그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전문적 미국통으로 지적되어야 하고 유능하다.”¹²⁴ 라고 하여 대

122) 비밀보고서 INCLOSURE No.7. Biographic Note on K.P.S. MENON.

123) 비밀보고서 INCLOSURE No.26. Biographic Note on K.G. NAIR.

124)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4. Biographic Note on I.J. BAHADUL SINGH.

단히 긍정적이었다. 이로 보아 그는 전임자(메논)와는 달리 친미적 입장에 서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1) 후쓰태(胡世澤) : 미국에서 태어나 워싱턴에서 국민학교를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러시아에서 마쳤으며 대학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한 법률학 박사 출신인 그는 다양한 학력 만큼이나 경력도 화려하다.¹²⁵ 191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으로 독일대사(1924)와 중·소조약 중국측 대표로 활동할 만큼 당시 중국의 대표적인 외교관의 한사람이다. 이러한 남다른 학력과 경력으로 그는 UN 창립 당시 중국측 준비위원으로 참가했으며 1947년 UN 팔레스타인 위원단 대표로 활약했으며 UN 부사무총장겸 UNTCOK 사무총장 자격으로 내한하였다.¹²⁶ 따라서 UNTCOK에서의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의 활동과 생각이 또한 남달랐다. 그는 한국문제를 단순한 한반도 문제로 보지 않고 향후 이 문제가 미국과 소련사이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예견했다.¹²⁷ 따라서 한국이 냉전 구조하에서 '한민족 분단'으로 결정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누누히 지적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측의 한반도 분단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으로 그 역시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한 채 1948년 3월 위원단을 떠나고 말았다. 후술하거니와 UNTCOK구성원중 미국측에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구성원들은 예외 없이 임기 도중에 한국을 떠났고 그 후임은 대부분 친미적인 인물들로 교체되었다.

12) 주홍티(朱홍리) : UNTCOK 사무총장 후쓰태(胡世澤)의 보좌비서관으로 내한하였으나 후쓰태(胡世澤)와 함께 이한하였다. 뉴욕에 거주하며 1945년 샌프란

125) 비밀보고서 INCLOSURE No.6. Biographic Note on HU SHIH-TSE(VICTOR HOO).

126) 동책.

127) 동책.

시스코 회의의 중국대표단의 일원이기도 했던 그에 대한 미 연락장교의 평가는 “박식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컸으나, 능력 없는 학생 타입이다.”¹²⁸ 라고 하여 미국의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3) 리유완(劉馭萬) : UNTCOK 내한 당시 주한 중국총영사로 활약 중 UNTCOK중국대표로 선임되었다.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국제정치학)을 마쳤으며 귀국 후에도 YMCA국제위원회 의장직을 역임할 정도로 활발한 국제적 활동을 했다. UNTCOK이 창설되자 중국 대표로 선임된 이래 UN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¹²⁹ 특히 중미문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사회의 여러층과 폭넓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그는 기본적으로 친미적인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미군정 비밀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유능하고 정확한 정치가”라는 평을 받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미국통’으로 분류되어 있다.¹³⁰ 그러나 일부 한국인 지도자들로부터는 그가 한국에 중국의 영향을 강화시키려는 인물로 비치기도 하였던 것 같다.¹³¹

14) 왕궁싱(王恭行) : 중국측 부대표로 1월 29일 내한하였다. 그는 1930년 부터 미국 뉴올리안즈 영사로 재직한 전문적 미국통이다. 제1차 UN총회(1946), 제2차 UN총회(1949)에서 중국대표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친미주의자일 수 밖에 없었던 그에 대한 미 연락장교의 평가 역시 “유능한 외교관으로 자신감과 지성이 넘쳐 흐른다.”¹³² 라고 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28) 비밀보고서 INCLOSURE No.23. Biographic Note on CHU HUNG-TI.

129) 비밀보고서 INCLOSURE No.9. Biographic Note on LIE YU-WAN.

130) 동책.

131) 동책.

132) 비밀보고서 INCLOSURE No.22. Biographic Note on WANG KUNG-HSING(C.H. WANG).

15) 쉰류태(司徒德) : 중국측 부대표로 한국에 1948년 2월 13일 온 인물이다. 그의 UNCTCOK활동에서의 주된 관심과 노력은 한국에서 중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¹³³ 따라서 미국측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측과 인연을 갖고 있는 金九 등 韓獨黨 인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시도하였다.¹³⁴ 그러나 이같은 그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패터슨(G. S. Patterson) : UNCTCOK위원중 가장 고령자(62세)이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소신있게 위원회에서 개진하였으며 그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UNCTCOK 활동을 포기한 인물이다. 그는 일찍이(1912년) 감리교 소속 전도사 자격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중 1931년 한국을 다녀간 경험이 있으며 1946년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동양통이다.¹³⁵ 따라서 그는 자신의 조국, 캐나다가 미·소경쟁의 희생물이었듯 한국이 UN이라는 강대국 놀음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는 미국의 간섭과 영향하에서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자신의 적극적인 표현으로써 UNCTCOK 활동을 포기하였다.

17) 봉쿠르(J. P. Boncour) : 1920년대 초 부터 외교관으로 출발 한 때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외삼촌(수상)의 정치적 영향권에서 자란 인물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매우 연약하고 게을러 보이는 외모에 불쌍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다.¹³⁶ 미 연락장교 보고서는 이밖에도 그가 한국에서 목적인 바는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있었다. 따

133) 비밀보고서 INCLOSURE No.20. Biographic Note on SSU-TIU TEH.

134) 동책.

135)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1. Biographic Note on GEORGE SUTTON PATTERSON.

136)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2. Biographic Note on JEAN-LOUIS PAUL-BONCOUR.

라서 그에게 정의는 없었다.”고 혹평하고 있다.¹³⁷ 미국에 대해 ‘매우 유리한 입장으로 행동’했던 그를 이렇게 혹평한 경우는 극히 드문 예라 하겠다.

18) 마네(Olivier Manet) : 봉쿠르와 함께 프랑스 부대표로 제1,2분과에 소속되었으나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반 알 수가 없다. 1934년 영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 직원을 시작으로 외교관 생활을 해온 그는 스스로 ‘현실주의자’라고 말했듯이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신봉하지만 현상황 하에서는 공산주의는 위험하다는 판단에서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는 현실론을 주장하는 입장이었다.¹³⁸ 현실주의자였던 그가 UNCTCOK에서 친미적인 입장을 취했음은 물론이다.

19) 아란즈(M. Arranz) : 필리핀을 대표하여 선임된 그는 과학자이자, 국회위원 출신으로 탁월한 달변에 예의 바른 인물로 위원 중 ‘흔치 않은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다.¹³⁹ 그러나 그의 UNCTCOK에 대한 입장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UNCTCOK의 창립 자체를 ‘비합법적인 기구’라고 비판했으며 따라서 한국 문제는 UN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일괄된 그의 입장 표명으로 그는 다른 위원들 보다 앞선 194년 2월 3일에 한국을 떠났다. 요컨대 그의 입장은 반미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 루나(R. Luna) : 교체위원 대부분이 그렇듯 반미적인 입장을 취했던 아란즈의 후임으로 교체된 그는 미국측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¹⁴⁰ 그러나 그의 활동은 별반 주목할 것이 없었다. 우선 그는 전임자에 비해 여러면에서 부족한 인물이었으며 특히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점과 한국 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 미 연락장교의 비밀보고

137) 동책.

138)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9. Biographic Note on OLIVIER MANET.

139) 비밀보고서 INCLOSURE No.25. Biographic Note on MELECIO ARRANZ.

140)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5. Biographic Note on RUFINO LUNA.

서에서 마저 그를 가리켜 “위원회 회기 동안 지도적 위치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부기되어 있을 정도이다.¹⁴¹

21) 잭슨(S. H. Jackson) : UNTCOKd위원중 가장 신망이 높았던 인물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 정책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에서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입장에 동조하는 메논(K. P. S. Menon), 패터슨(G. Patterson), 무길(Y. Mughir) 등과 함께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소총회에 소상히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반미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자연히 미국측을 당황시켰으며 따라서 미군정측은 그에게 ‘미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회유책으로 그를 임기 중에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했다.¹⁴²

22) 제미슨(A. B. Jamieson) : 잭슨(S. H. Jackson)의 후임으로 내한한 호주 포스트(post)지 편집자 출신인 그는 잭슨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 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열의도 없어”¹⁴³ 보일 정도로 무력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에서도 보았듯 교체위원으로 내한한 위원들은 대부분 이같은 소극적 내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여기에는 미국측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상세하게 밝혀보기로 한다.

23) 밀러(I. F. G. Miner) : 옥스포드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그는 같은 호주 대표였던 잭슨(S. H. Jackson)과 절친한 친구로서 미국측의 입장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인물 중의 한사람이다. 미 군정청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141) 동책.

142)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0. Biographic Note on SAMUEL HENRY JACKSON.

143) 비밀보고서 INCLOSURE No.182. Biographic Note on A. B. JANIESON, Australian Delegate, UNTCOK.

“UNTCOK에서의 그의 업적은 미국에 반대하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위원이었으며 당시 남한의 정치적 상황을 ‘경찰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회에 동의 없이 UN총회에 보고할 만큼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인물이었다.¹⁴⁴ 이러한 이유로 미 연락장교로 부터 그는 “UNTCOK의 업적을 파멸시키려는 자이며, UN에서의 그의 독자적인 영향과 소련측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인물”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표2>와 미 연락장교의 코멘트를 통하여 나타난 구성원 각 개인의 성향을 도표화 한 것이 <표3>이다.

<표 3> UNTCOK 구성원의 성향

| 구분 | 성명 | 친미성향 | 반미성향 | 비고 |
|----|----------------------------|------|------|--------------------|
| 1 | 슈미트 (Petrus J. Schmidt) | | ○ | 사회주의자였고 전에는 민중운동가. |
| 2 | 비너츠 (Coert Binnerts) | ○ | | 슈미트 후임. |
| 3 | 슈라이버 (Marc Schreiber) | | ○ | 혁신주의적 경향. |
| 4 | 자비 (Zeki Djaby) | | ○ | 남한단독선거에 반대. |
| 5 | 무길 (Yusin Mughir) | ○ | | 비판적 지지자. |
| 6 | 발레 (Miguel A.P. Valle) | ○ | | |
| 7 | 린도 (Hugo Lindo) | ○ | | |

144) 비밀보고서 INCLOSURE No.21. Biographic Note on IAN F.G. MILNER.

| 구 분 | 성 명 | 친미성향 | 반미성향 | 비 고 |
|-----|------------------------------|------|------|-----------------------------|
| 8 | 메논 (K. P. S. Menon) | | O | 남한단독선거에 반대. |
| 9 | 나일 (K. G. Nair) | | O | 메논의 의견동조(남한단독선거에 반대). |
| 10 | 싱 (I. J. Bahadur Singh) | O | | 메논 후임. |
| 11 | 후쓰태(胡世澤) | | O | 남한단독선거에 반대. |
| 12 | 추홍티(朱홍리) | | O | 미국에 비협조적. |
| 13 | 리유완(劉馭萬) | O | | |
| 14 | 왕궁싱(王恭行) | O | | |
| 15 | 쑤류태(司徒德) | O | | |
| 16 | 패터슨 (George S. Patterson) | | O | 남한단독선거에 반대. UNTCOK활동 포기. |
| 17 | 폴-봉쿠르 (Jean Paul-Boncour) | O | | |
| 18 | 마네 (Olivier Manet) | O | | |
| 19 | 아란즈 (Melecio Arranz) | | O | UNTCOK를 비합법기구로 봄. |
| 20 | 루나 (Rufino Luna) | O | | 아란즈 후임. |
| 21 | 잭슨 (Samuel H. Jackson) | | O | 남한단독선거에 반대. |
| 22 | 제미슨 (A. B. Jamieson) | O | | 잭슨 후임. |
| 23 | 밀러 (Ian F. G. Milner) | | O | 남한을 경찰국가로 봄. |
| | | 12명 | 11명 | 계 : 23명 |

〈표3〉에서 나타나는 바 UNTCOK는 친미성향을 보이는 구성원들과 반미성향을 보이는 구성원들의 숫자가 각기 12명 대 11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하여, 친미성향자 중에서 후임으로 온 교체인원(5명)을 제외한 채, 친미성향자와 반미성향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원비율은 7명 대 11명으로 반미성향을 보이는 쪽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반미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은 거의 중도에서 귀국하였고, UNTCOK의 인적 구성은 친미적 12명 대 반미적 2명으로 초기의 비율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UNTCOK의 인적 구성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는 소총회의 남한 단독선거 권고 결정(2.26) 전후를 통하여 엿보이고 있으며, 결정적 시점은 UNTCOK가 주한 미국사령관이 3월 1일 발표한 단독선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한 시기(3.12)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UNTCOK의 활동은 인적 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초기의 독자적, 적극적인 활동단계에서 후기로 갈수록 점차 미군정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UNTCOK 위원과 사무직원으로 내한했던 23명의 구성원에 관해 그들의 전력과 한국에서의 활동성향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사실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UNTCOK 초기 구성원들의 성향은 반미적 성향이 강했다. 따라서 UNTCOK는 미국의 영향하에서 보다 자유로운 입장, 즉 자율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둘째, 초기의 반미적인 인원구성비는 미국의 압력 하에 깨어지기 시작하였고,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후임자들이 내한함으로써 UNTCOK의 활동도 점차 미국의 영향하에 놓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계기는 소총회의 남한 단독선거 결정(2.26)을 전후로 하여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대폭적인 변화의 시점은 미군정의 남한 단독선거 실시 공포에 따른 선거감시 결정(3.12)과 거의 때를 같이 한다. 셋째, 미국측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중도에서 직분을 사임하고 본국으로 소환 내지 귀국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들은 UNTCOK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UNTCOK의 활동을 변질시켜 갔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하겠다.

여기에 당시 한국(남한)은 미군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UNTCOK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영향은 더욱 심각했던 것이다.

2. 남·북한총선거 추진기의 활동 : 내한 - 소총회 결정.

UNTCOK는 1948년 1월 8일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여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시리아 대표가 포함되었다. 이 때 중국대표로 활약한 사람은 서울에 주재하고 있던 중국 총영사였다. 캐나다 대표는 1월 11일 도착했고, 프랑스와 필리핀 대표는 12일날 도착했다. 엘 살바르도 대표단은 1948년 1월 29일에 도착했다.¹⁴⁵

이러한 UNTCOK의 내한에 대해 남한의 주요 정치세력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면, 우익 특히 이승만은 위원단의 도착과 함께 자신이 정치권좌를 장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기되는 선거를 진지하게 고대하였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선전부는 UNTCOK와의 협조를 그들의 정책으로 표명했다.¹⁴⁶

김구는 UNTCOK의 도착을 환영하였는데, 그 이유는 UNTCOK가 남북통일 총선거

145) 국사편찬위원회 (이하 '국편'으로 줄임), <<대한민국사자료집 1>>, 1987, 4쪽.

146) 국편, 위의책, 6쪽.

실시, 38선 취소, 남북요인회담, 독립된 통일정부수립, 미·소양군 철수 등의 조건을 실시하러 온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¹⁴⁷

중도 정치인들은 미·소 양군의 철수를 찬성하였고, UNTCOK를 한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기구로 보지 않았지만 UNTCOK의 성공을 진심으로 희망하였다.¹⁴⁸ 그러나 김규식은 극우주의자와 극우언론에 의해 끊임 없이 중상모략을 당해왔고 이승만에 의해서는 공산주의자로 매도되어 왔는데, 사실 이승만은 한국에 있는 미국지휘관을 포함해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를 그렇게 매도했다.¹⁴⁹

좌익 진영은 UNTCOK를 반대했고 미·소양군이 철수한 것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다.¹⁵⁰

한편 UNTCOK¹⁵¹는 1948년 1월 12일 5시 엘 살바도르, 우크라이나 공화국 대표들의 불참속에 공개리에 제1차 전체회의 (제1차, 16차 공개, 나머지회의는 비공개)를 개최하였다. 1차전체회의에서 인도의 K. P. S. 메논이 임시의장에 선출되었다. 필리핀 대표는 우크라이나 공화국 대표의 참여 거부 문제에 대하여 UN 소총회와 협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 제안은 제4차 전체회의(1.16)에서 UN의 전례¹⁵²를 이유로 폐기되었다.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주한 미·소양군사령관에게 보내는 서신이 채택되었고, 이 서한은 주한 미군 사령관과 주한 소련군 사

147) 강만길,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일보사, 1987, 206쪽.

148) 국편, 앞의책, 4쪽.

149) G-2 W/S 권4, 668쪽.

150) 국편, 앞의책, 8쪽.

151) 대표와 사무국직원을 합해서 30명을 넘은 적이 없었다.

152) 제4차 전체회의 석상에서 UN의 경우 그 보조기구들은 관계정부가 일부대표를 임명하지 않았어도 임무를 계속한 몇몇 전례가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령관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1월 14일 서울운동장에서 UNTCOK의장(메논)의 연설¹⁵³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어떤 페이지들이 생략되었다는 주장이 있어서, 위원단은 원문전체가 방송되어야 하고 이 원문과 그 이전 연설문이 남북한군사령부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제5차 전체회의(1.17)와 제6차 전체회의(1.19)에서는 UNTCOK산하 세 개의 분과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즉 제1분과위원회는 캐나다(의장), 프랑스, 시리아대표로 구성되었고, 선거의 자유분위기 확보방법과 수단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2분과위원회는 호주(의장), 중국, 프랑스, 필리핀 대표로 구성되었고, UNTCOK의 업무를 위해 청문을 원하거나, 지도자급 한국인사들을 청문하기로 하였다. 제3분과위원회는 필리핀(의장), 캐나다, 프랑스, 시리아 대표로 구성되어, 남북한의 선거법규를 검토하고, 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 소련 및 미국관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타진하기로 하였다.¹⁵⁴

이같은 체제하에서 UNTCOK는 22일 공보 제17호를 통해, “제2분과위원회는 남북 정치지도자와의 협의대상으로 우선, 李承晩, 金九, 金奎植, 金性洙, 曹晩植, 金日成, 許憲, 朴憲永, 金料奉 등과 면담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날부터 정식 면담을 시작하였다. 첫 면담에 나선 이승만은 면담을 마친 후 ‘UN과의 협의하에 먼저 남한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히고 ‘그들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이승

153) 연설내용의 요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UNTCOK와 한국민들의 공동의 목표는 독립이며, 통일이다. 조선은 정치·경제·문화 모든 것이 단일적이므로 필연코 하나가 되어야 한다. UNTCOK는 이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 : 서울신문, 1948.1.15자. 경향신문, 1948.1.15자. 동아일보, 1948.1.15자)

154) 국편, 앞의책, 11-14쪽.

만의 발언이 보도되자 UNTCOK는 즉각 '우리는 정치지도자의 의견만 타진했지 우리의 견해를 피력한 바 없다'라고 부인하여, 결국 이것은 이승만의 정치적 발언으로 밝혀졌다.¹⁵⁵

김구는 UNTCOK 제2분과위원회에서 태도를 표명하기에 앞서 김규식과 의논하였고, 김규식은 UNTCOK와의 협의에서 강조해야 할 주요 현안에 관해 김구가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여도록 암시하였다.¹⁵⁶ 김구는 UNTCOK와의 대답에서 "남북에서 미·소양군이 철수한 후 남북 요인 협상으로 총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⁷ 이에 대해 독립촉성국민회는 만약 김구가 계속 김규식을 지지한다면 김구를 공공연하게 반역자로 몰 것이라고 하였다.¹⁵⁸

이 때 김규식은 UNTCOK는 한국의 통일을 가져올 수 없으며 그 반대로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는 UNTCOK와의 대답에서도 자신의 논지를 강력히 전개하여 위원단에 감명을 줌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UNTCOK가 진정 자유민주선거를 원한다면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김규식은 소련이 UNTCOK의 입북을 저지한다면 동 위원단은 모든 문제를 UN소총회(Interrim Committee)에 재고하도록 넘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¹⁵⁹

UNTCOK는 1월말까지 李承晩, 金九, 金奎植, 韓景職, 白永燁, 呂運弘 등과 회견한 후, 2월 2일에는 安在鴻, 趙炳玉과 회견하고, 3일에는 근로인민당의 張建相과 회견하였다.¹⁶⁰ 그리고 UNTCOK는 좌익측의 민족주의민족전선의장 허헌,

155) 송남헌, 앞의책, 512쪽.

156) G-2 WS #125, G-2 W/S 권5, 5쪽.

157) 송남헌, 앞의책, 512쪽.

158) G-2 W/S 권5, 5쪽.

159)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73쪽.

인민당수 김원봉, 전국농민연합회장 배영희, 민주여성총연맹 회장 유양춘 등을 면담하려 했다. 그러나 2월 18일 주한미군사령관이 “위에 언급된 사람 중 어느 누구도 UNTCOK와 접견할 수 없으며 UNTCOK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발표하므로써 이루어지지 못했다.¹⁶¹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한에서 개진된 모든 의견들 중 이승만 진영(한민당 포함)과 미군정 당국만이 남한에서의 분리단독선거를 주장했다. UNTCOK의 대다수 위원들은 남한단독 분리정부의 구성이 ‘한국독립 획득’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UN총회에서 결정된 위임권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¹⁶² 더우기 UNTCOK의 일부위원들은 남한에서의 정치적 소요를 막으려는 하지의 노력에 크게 당혹했다. 캐나다의 조지 패터슨(George Patterson)과 호주의 잭슨(S. H. Jackson)은 하지의 ‘경찰수법’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수사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¹⁶³

한편 이승만은 국제감시하의 선거를 저지하는 데 실패한 후 이제는 UNTCOK가 단독정부의 수립을 무한정 연기시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가 매우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되지 않으면 광범위한 시위와 정치적 폭력을 자행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¹⁶⁴ 이승만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태에도

160) 송남헌, 앞의책, 512쪽.

16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21쪽.

162) 존 할리데이, 앞의책, 98쪽.

163) NYT, 1948.2.8, p.1 ; NYT, 1948.2.11, p.10 ; Jacobs to Marshall, 1948.2.8, FRUs 1948, VI, 1095-1097.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74쪽에서 재인용.

164) Gordenker,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p.66 ; Jacobs to Marshall, 1948.2.9, 국무성기록, 895.00/2-948 ; Jacobs to Marshall, 1948.2.10, FRUS 1948, VI, 1099-1101.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74쪽에서 재인용.

상관하지 않고 남한지역에서 만이라도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는 4주 이내에 완수될 수 있다고 믿었다. 동시에 하지와 미군정 관계자들은 워싱턴 행정부에 UNTCOK를 설득시켜 남한의 선거를 더 이상 연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¹⁶⁵

이러한 상황에서 2월 4일 열린 UNTCOK 8차 전체회의에서는 UNTCOK의 첫번째 주요 결정을 가져온 토론, 즉 UN 본부 소총회에 한국문제 전체를 회부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UNTCOK는 첫째, 소총회에 즉각 보고할 것을 원하는 위원들(캐나다, 호주, 시리아), 둘째, 그 본래의 위임명령을 한국 전체보다는 남한에서만 적용시켜 추진하고 소총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기를 원하는 위원들(중국, 필리핀, 프랑스), 셋째, 가능한 한 위임명령을 계속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기를 원하는 위원들(인도, 엘 살바도르) 등 세진영으로 갈라졌다.¹⁶⁶

제9차 전체회의(2.5)와 제10차 회의(2.6)까지 계속 토의된 이 문제로 인하여 UNTCOK는 소총회에 조회를 원하는 인도, 캐나다, 호주, 시리아 측과 UNTCOK가 접근 가능한 한국지역 내에서 선거 추진을 바라는 프랑스, 중국, 필리핀 측으로 확고히 구분되었다. 이리 하여 10차 전체회의 이후 계속된 11차 전체회의(2.6)는 “위원단은 상황전개에 비추어 UN소총회와 협의한다.”는 결의안을 통과하였고, 결의안은 큰 수정없이 장문화되어 통과되었다.¹⁶⁷

165) Gordenker,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p.66 ; Jacobs to Marshall, 1948.2.9, 국무성기록, 895.0012-948 ; Jacobs to Marshall, 1948.2.10, FRUS 1948, VI, 1099-1101.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75쪽.

166) 국편, 앞의책, 15쪽.

167) 국편, 앞의책, 15-16쪽.

또한 제12차회의(2월 11일)에서는 소총회에 “1947년 11월 14일의 결의안을 남한에서 이행하는 것이 UNTCOK의 임의에 맡겨진 것인가 또는 UNTCOK에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인가”를 문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상임의장인 K. P. S. 메논(인도대표)을 소총회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UNTCOK은 며칠 전에 접수한 북한과 협상하려는 김규식과 김구의 계획을 토의하는 한편, 후에는 이승만에게 까지 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격려했다.¹⁶⁸

이후 제13차 전체회의(2월 12일)가 개최되었고, 회의의 최종 결과는 소총회에 “첫째, 소련이 취한 부정적 태도에 비추어 볼 때 UNTCOK가 11월 14일의 결의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 둘째, 만일 UNTCOK가 추진할 수 있다면 제1부에 따라서인가 아니면 제2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두 질문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그날(2월 12일) 오후 늦게 메논은 한국방송을 통해 위원단이 소총회에 협의하기로 한 결정을 한국 국민에게 알렸고 위원단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던 상황도 설명했다.¹⁶⁹

이 시기의 상황을 G-2 W/S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메논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UN본부로 다시 이관하였다. 첫째, UNTCOK는 한국 독립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며, 그 활동이 무한히 연기되어야 한다. 둘째, 소총회와 상의할 대표선정을 위한 선거가 남한에서 치루어져야 한다. 셋째, 남한에서의 국회의원 선거 개최는 후에 선출될 북한 대표를 위해 의석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선거는 남한 독립정부 수립을 위해 치뤄져야 한다.¹⁷⁰

결국 UNTCOK는 업무개시 한 달만에 한국의 독립과 통일문제를 그들 자신의 힘

168) 국편, 앞의책, 16-17쪽.

169) 국편, 앞의책, 17쪽.

170) G-2 WS #125, G-2 W/S 권5, 5쪽.

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원인으로는 북한지역의 접근 불가라는 상황 이외에도 UNTCOK가 접근 할 수 있었던 남한지역에서 조차 미군정과 이승만 진영만이 선거를 원할 뿐, 대다수의 정치세력들이 점령군 주둔하의 남한 단독선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UNTCOK는 남한 내에 정치적 박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파하였고,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문제 전체를 소총회에 회부시키는 안건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UNTCOK는 미국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정책을 지지하는 중국, 필리핀, 프랑스 측과 그것에 반대하는 호주, 캐나다, 인도, 시리아 등으로 분열되었고, 결국 UNTCOK는 한국의 독립과 통일문제를 소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즉 UNTCOK는 UN총회의 위임을 한국에서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소총회에 통보하기로 한 것이었다.

UNTCOK 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남한 정치세력들은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승만은 전국적으로 총선거 촉진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선거를 즉시 단행할 것을 요망한다는 요지의 대국민 연판장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월 5일 그 일부를 UNTCOK 사무국에 전달하였고, 인도의 간디 추도회를 2월 16일 시공관에서 개최하였다.¹⁷¹⁾ 간디추도회는 UNTCOK대표로 소총회에 참석하는 상임의장 메논의 환심을 사기위해서 였다.

반면 김구와 김규식은 UNTCOK의 격려와 고무속에서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1948년 2월 16일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각각 '통일정부 수립과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관한 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남

171)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294쪽.

북정치지도자 간의 정치협상을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하였고,¹⁷² 계속해서 통일 한국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편 이 시기 남로당과 민전은 단선과 분단정권 수립저지를 위한 조직적·목적의식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2·7구국투쟁, 제주 4·3 무장봉기, 5·10반대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투쟁들은 이 시기 남한 전체 정세의 집약적 표현이었다고 여겨지며, 그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분단국가를 지향하는 극우세력의 본질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UNTCOK는 계속해서 제14차 전체회의(2.13)를 소집하였고 이 때 캐나다 대표 패터슨은 “소총회가 남한에서 선거를 추진하도록 UNTCOK에 지시하는 경우 첫째, 선거는 UN총회가 면담을 위해 초청할 대표들을 선출하는 데 있다. 둘째, 선거를 위한 자유분위기가 미국 당국에 의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UN은 기존 선거법이 UN의 자유국가들이 승인한 법들과 모순이 없도록 기존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토론이 매우 지연되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¹⁷³ 이 결의안은 UNTCOK 의장 메논과 사무총장 후쓰태(胡世澤)가 2월 14일 소총회와 협의차 한국을 떠난 후에도 15차 전체회의(2.16)에서 토론이 계속되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뉴욕의 UN본부에 도착한 메논은 2월 19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제를 소총회에 제시하였다. 첫째, 1947년 11월 14일 UN총회 결의안 규정상 그리고 그 후 한국에서 전개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군이 점령한 한국 지역에서 결의안에 설

172) 송남헌, 앞의책, 534-535쪽.

173) 국편, 앞의책, 18쪽.

정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위원단의 임의에 맡겨졌거나 또는 위원단의 의무로 부과된 것인가? 둘째, 그렇지 않다면, 위원단은 선거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행해질 수 있다고 할 경우, 1947년 11월 14일의 결의안 I에 설정된 대로 한국문제의 검토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대표들의 선거에 참가해야 하는가?¹⁷⁴

이 같은 메논의 보고서가 소총회에 제출되었을 때 미국은 두가지 이유로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첫째, 이 기구는 소련진영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총회 제2차회기(1947.11)에 설립되었기 때문이었고, 둘째, 캐나다, 호주와 같은 우방국가들이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미국의 입장에 반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주장에 의하면 UNTCOK는 “비합법위원회(소총회)로 부터 지시를 받은 비합법위원단”이었다. 즉 헌장 22조에 의해 총회 보조기관으로써 소총회를 창설한 것은 소련 대표단에게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우회해서 이사회의 권한을 훼손시키고 만장일치 규칙을 무효화 시키는 시도로 보였던 것이다.¹⁷⁵

이 시기 미국의 입장은 G-2 W/S에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다.

만약 소총회가 위원단의 한국독립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럴듯하지 못한 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유일한 대안은 그 문제에 대해 심층토론하는 것이고 소련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절충하거나 4대강국 판결에 전문제를 이관하는 길이다. 소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미·소가 한국으로 부터 군대를 동시 철수하여 한국이 독자적인 운명을 개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미온적인 결정은 비록 한국인들이 군대철수에 대한 최근의 감정 아래 받아들여 진다해도 미국으로서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UN역사상 아주 중요한 이

174) 국편, 앞의책, 19쪽.

175) U.N. Document A/C. 1/SR. 74, pp.133-137. 조승순, 앞의책, 160-161쪽에 서재인용.

정표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176

결국 미국무장관 마샬은 각 임시위원단 소속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대사에게 단독선거를 수락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은 UN감시하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강행하는데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심각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지연 가능성도 배제해 버렸다. 마샬 국무장관은 오스틴(W. Austin) UN 대사에게 UNTCOK의 보고를 검토하기 위해 짧은 시간의 정회만을 갖도록 훈령했다.¹⁷⁷

소총회가 메논의 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는 동안 미 행정부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마샬은 소총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영국과 인도 정부에 전문을 보내 한국인들은 그 절대 다수가 조기선거와 즉각적인 독립을 원하고 있으므로 UN과의 단순한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마샬의 전략은 서서히 효력을 나타냈다. 2월 23일 영국은 워싱턴에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통고하면서 영국이 미국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고 천명했다.¹⁷⁸ 인도주재 미국대사는 인도 정부에게 미국의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176) G-2 WS #125, G-2 W/S 권5, 5쪽.

177) Marshall to Certain Diplomatic Offices, 1948.2.9, FRUS 1948, VI, 1098-1099 ; Robert L. Butler to Marshall, 1948.2.12, *ibid.*, 1104 ; Waldemar J. Gallman to Marshall, 1948.2.12, *ibid.*, 1105 ; Marshall to Austin, 1948.2.18, *ibid.*, 1116-1117 ; NYT, 1948. 2.20.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76-177쪽에서 재인용.

178) Marshall to London, 1948.2.21, FRUS 1948, VI, 1124-1125 ; London to Marshall, 1948.2.23, *ibid.*, 1127-1128 ; New Delhi to Marshall, 1948.2.26, *ibid.*, 1128n.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77-178쪽에서 재인용.

인도는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⁷⁹

이리하여 2월 24일 미국대표 저섭(Philip Jessup)은 UNTCOK는 접근이 가능한 한국 내 지역에서 국회의원선거를 관찰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고, 많은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영구분단과 두 개의 적대정부 수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미국의 견해에 반대했다. 캐나다의 피어슨(Pearson)은 총회의 결의는 분명히 한국 전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총회는 그 선거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국측 결의안을 수정하였으므로 그와 다른 과정을 택하는 것은 소총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는 그러한 활동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남한에 수립될 정부는 북한과 대립하게 될 위험성이 짙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덧붙이기를, 만약의 경우 북한이 한국 정부에 위협을 가하게 되면 국제연합은 자신이 수립한 한국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원조를 하여 주든가 아니면, 모든 책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리라고 하였다.¹⁸⁰

또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몇몇 나라는 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하거나, 양점령국 간의 새로운 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¹⁸¹ 반면 다른 대표들은 선거가 남한에서 만이라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한편, 그렇게 수립되는 정부는 임시정부로 취급되어야 하고 한국민을 보다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정부 수립은 미해결의 상태로 둘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문제의 토의에 있어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련과 한국민의 대표가 토의에 참석하지 않았는 점이다.¹⁸²

179) 국편, 앞의책, 23쪽.

180) UN문서, A/AC. 18SR 6, Feb. 28, 1948, p.7.

181) 조순승, 앞의책, 16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6일 소총회는 미국측 대표 저섭의 제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고,¹⁸³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본 소총회의 견해로는 1947년 11월 14일 UN총회의 결의와 그 이후 한국에 관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의 지역에서 결의 제2호에 논술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UNTCOK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¹⁸⁴

이같은 소총회의 결의가 한국에 대해 가지는 의미의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UNTCOK가 남한에 중앙정부를 수립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함으로써 북한에도 이와같은 정부가 수립되어 대립하게 된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UN이 통일된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분단을 영구화시키고 나아가서 혈전(血戰)을 전개하도록 조장한다고 여길 것이었다. 소총회의 조치가 과연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짙은 의혹은 투표의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소총회에서 UNTCOK의 회원국인 영연방 2개국(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이 반대표를 던졌고, 11개 회원국이 기권하였다. 한편 찬성표를 던진 31개 회원국 중 18개국은 소총회가 인정한 추가설명¹⁸⁵에 전적으로 찬성했으며 이것을 UNTCOK에 옮겨 실행하도록 하는 데

182) 릴랜드 구드리치, 앞의책, 390쪽.

183) Austin to Marshall, 1948.2.24, IBID., 1128-1129 ; DSB 18(1948.3.7) : 297-298 ; NYT, 1948.3.27, p.1.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87쪽에서 재인용.

184) U.N. Document, A/583.

185) 조순승, 앞의책, 163쪽.

(아래의 제 사항을 유의하도록 UNTCOK에 통보)

1. UNTCOK의 주관하에 실시될 선거는 의사발표, 언론, 집회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선출될 의원들에 의하여 구성될 국회는 한국정부를 형성하는 실제적인 무대가 될 것이며 그 정부형태는 한국민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이러한 결론이 도달함에 있어서 소총회는,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자유로이 UNTCOK와 협의할

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¹⁸⁶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8년 1월 8일 한국에 도착한 UNTCOK는 업무 개시 한 달만에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는 UN총회의 위임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미군정과 국내의 단정·분단세력들은 남한 단독선거 실시를 위한 국내의 압력을 가중하는 동시에, 미 본국에 UNTCOK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UNTCOK는 한국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소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김구·김규식의 남북한 정치지도자 회담을 지원하였다.

UNTCOK의 보고가 소총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미국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UN소속 제국가들의 미 주재 대사를 통하여 각국에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UNTCOK의 상임의장국인 인도에게는 미국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소총회의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결의안 -단독선거실시-이 한국의 영구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UNTCOK의 구성국가였던 캐나다는 소총회는 총회의 위임사항인 남북한 총선거를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호주는 소총회의 논의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적 강요 속에서 남한 단독선거 실시안은 찬성 31, 반대 2, 기권 11로

수 있으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정치단체들과 장차 수립될 정치의 형태 및 그들의 참여 여부에 관하여 원하는 대로 협상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총회는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그들 자신들의 노력으로 정부수립에 대한 전 한국민의 완전한 협력을 획득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3. UNTCOK는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디서든지 그 임무를 수행할 권한과 자유재량권을 가짐을 소총회는 인정한다.

186) 릴랜드 구드리치, 앞의책, 391쪽.

소총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분리단독선거에 대한 조건으로 선거의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부가되었다.

이같은 소총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토론 과정에 한국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1947년의 제2차 UN총회결정 때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미국은 한국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일관된 계획 즉,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소총회를 통해 관철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UNTCOK의 개입에 의한 한국 문제의 해결방안은 그것이 어떤 것이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차 UN총회 2차회기에서 UNTCOK의 협의기관으로 신설된 소총회는 총회의 결정을 변경하였고, 남한 단독선거의 실시를 UNTCOK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3. 남한단독선거 감시기의 활동 : 소총회결정 이후-5·10선거.

소총회가 결의를 채택한 이틀 후인 2월 28일 UNTCOK는 미군정의 요구로 소총회 파견대표 의장, 사무총장과 캐나다 대표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위원단은 UN총회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선거를 위해 준수되어야 할 조건에 대한 소총회의 건의를 고려하여, 1948년 5월 10일 이전에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의 지역에서 선거를 참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3월 1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¹⁸⁷

뉴욕의 UNTCOK 상임의장(인도대표:메논)과 서울의 UNTCOK 수석비서관(호주:밀리) 사이의 전화 대담(2.29)에서 의장은 2월 28일 비공식회의의 결정에 동의하

187) 국편, 앞의책, 19-20쪽. 이러한 결정은 미군정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였다. 패터슨(캐나다 대표)은 도쿄에서 전화를 받았으나 동의를 거부했다. UNTCOK의 성명서(2.28의 결정)는 서울에서 개최된 3·1절 기념식장에서 중국대표(임시의장: 리우완)에 의해 대독되었다. 같은 날 하지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리고 UNTCOK의 감시 하에 5월 9일에 선거가 실시된다고 공표하였다.¹⁸⁸

이 시기 UNTCOK 단원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잭슨(호주)은 UNTCOK가 소총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UNTCOK의 대부분은 그들이 자유선거를 참관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국민의 자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세워지고, 둘째, 비난받고 있는 남한의 경찰지배는 분권화나, 재조직, 또는 재교육으로 종식되어야 하며, 셋째, 정치범들의 사면을 선포해야 한다.¹⁸⁹ 는 것이다.

한편 3월 8일 제16차회의(일반에 공개)에서 메논은 소총회에서 있었던 토론을 요약 발표했는데, 중국, 엘 살바도르, 필리핀, 프랑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짧은 연설을 했다. 무길(시리아 대표)은 자유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경고했고, 그는 선거 후 이견을 가진 소수위원들의 참관 결과 보고서의 작성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패터슨(캐나다 대표)은 소총회가 제의한 결의안은 권고의 성격이며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역시 UNTCOK에 달렸다고 강력한 어조로 위원단에 이를 상기시켰다.¹⁹⁰

이어 제17차 전체회의(3.9)에서 패터슨(캐나다)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발표한 몇몇 公言(5.9선거실시를 포함한)들에 대해 UNTCOK의 입장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했다. 패터슨은 2월 28일과 29일 양일자 회의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188) 국편, 앞의책, 20쪽.

189) 국편, 앞의책, 20쪽.

190) 국편, 앞의책, 21쪽.

UNTCOK가 선거 참관에 관해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본 것이 아니었다고 여겼다. 따라서 선거를 참관하고 소총회의 결의안을 이행하는 문제 전부가 위원단에 의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공식발표가 없는 한 그는 UNTCOK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패터슨의 제안에 대한 전체 투표는 다음 회의까지 연기되었고, 패터슨은 실제로 퇴장했다.¹⁹¹ 제18차 전체회의(3.9 오후)의 전체투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프랑스, 인도가 패터슨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시리아는 기권, 캐나다는 회의장에 없었고, 필리핀과 엘 살바도르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 투표를 근거로 UNTCOK가 선거를 참관하리라는 주한 미군사령관의 발표를 부정하는 내용의 공보 제41호가 발표되었다.

이 회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제안이 잭슨(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해 제시되었다. 제1차 잭슨결의안으로 불리는 그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UNTCOK는 한국에서의 참관과 자문에 관해 상황전개에 비추어 UN총회에 보고한다. 둘째, UNTCOK는 북한과 남한의 책임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다. 셋째, UNTCOK는 북한과 남한의 책임 당국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건의를 한다. 넷째, UNTCOK는 한국에서 1948년 4월 15일까지 철수하며 서울에 소규모의 연락단을 남긴다. 다섯째, UNTCOK는 1948년 8월중 한국에 돌아와서 상황을 재검토하고 권고할 만하면 UN총회의 결의안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한다.¹⁹²

패터슨(캐나다)은 공보 제41호의 승인이 있고 난 후에 제19차 전체회의(3.10)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잭슨의 결의안 토론이 계속되었고, 폴-봉쿠르(프랑스)는 그 결의안이 온당치 못하며, 그 기본적 논거가 한국 정치인들의 말에서

191) 국편, 앞의책, 21-22쪽.

192) 국편, 앞의책, 22-23쪽.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치인들은 갈팡질팡하는 무리”임이 명백하며, “위원단은 김구와 김규식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그들은 장차 한국에서의 영향력이 증가할지도 모를 또 하나의 강대국에 자신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 중에 패터슨(캐나다)은 미국이 소총회의 결정을 얻기 위해 압력을 가했는지 메논 의장에게 물었다. 메논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메논은 그의 정부의 경우 인도주재 미국대사가 미국 결의안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도록 인도에 요구하는 각서를 받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 중 메논은 선거법에 대해 조기 조치를 바라는 미국 연락장교의 긴급 요구를 고려하여, 선거법을 토론하자고 제의했다.¹⁹³

뒤이어 20차 전체회의(3.10 오후)에서는 남한의 선거법과 조항들이 수정 승인되었고, 제21차 전체회의(3.11)에서 다시 제1차 잭슨결의안이 토론되었다. 회의 전체가 제1차 잭슨결의안을 공격하거나 지지하는 위원들의 발언으로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지지했고, 시리아는 기권했고, 다른 위원들은 반대했다. 제22차 전체회의(3.12) 석상에서도 제1차 잭슨의 결의안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인도와 중국이 이 결의안을 계속 공격했다. 폴-봉쿠르(프랑스)는 “미군사령관이 1948년 5월 9일 실시될 것으로 발표한 선거를 참관한다.”는 결의안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토론한 결과 자유분위기가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UNTCOK가 참관해야 한다는 시리아의 수정안이 제의되었고, 수정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찬성 6, 반대 2(캐나다, 프랑스)였다. 시리아에 의해 수정된 프랑스 결의안은 “선거가 언론, 출판 및 집회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자유분위기에서 행해질 것이라는 조건에서, 주한 미군사령관이 1948년 5월 9일에 실시

193) 국편, 앞의책, 22-24쪽.

될 것으로 발표한 선거를 참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투표결과는 찬성4 (중국, 엘 살바도르, 인도, 필리핀), 반대 2(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기권 2 (프랑스, 시리아)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캐나다 대표는 그의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을 때 까지 위원단의 활동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¹⁹⁴

한편 선거를 준비하고 지도하는 책임은 UNTCOK가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인원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군정에게 맡겨졌다. UNTCOK의 인원은 비한국인으로서는 30명을 넘은 적이 없었다. 이 적은 인원으로 2천만의 인구와 10만Km²에 달하는 지역에서 선거를 감시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과거 유권자가 50만명 뿐인 짜르 지방의 1935년 국민투표에 1천명의 중립국 감시원들이 종사했었고, 인구가 약100만 명인 니카라구아에서 1933년 실시된 선거에 미국의 감시원 775명이 투입되었던 사실과 비교할 때 이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¹⁹⁵

그러나 릴랜드 구드리치는 “당시 남한에 있어서 UNTCOK는 선거 자체를 주관할 수 없었다. 즉 위원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선거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정도였다. 이 점에 관하여 위원단은 제의도 하고 권고도 해보았지만 미국의 태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선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허락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실시되어야만 했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¹⁹⁶

이로 보아 미국은 UN총회가 UNTCOK에게 위임한 선거주관의 권한을 임의로 변경하여 미군정이 대신하도록 하였고, 이미 UNTCOK의 구성국가 및 사무국 직원을 최소화함으로써 미군정에 의한 선거실시를 기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이승만은 가능한 한 UNTCOK에 의한 선거 감독을 막기 위해 활동

914) 국편, 앞의책, 24-25쪽.

195) 조순승, 앞의책, 174쪽.

196) 릴랜드 구드리치, 앞의책, 393-394쪽.

을 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청년단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대동청년단장 이철천, 한국청년총동맹의 유진산, 대한독립청년단의 서성천, 서북청년단의 문범재, 이종찬, 민족청년단의 이범석 등을 독립촉성국민회 중앙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¹⁹⁷ 또한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그룹이 모든 주요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조직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그룹을 UNTCOK의 대표단으로 활용하면서 모든 선거구의 국면을 지배하고자 했다.¹⁹⁸ 실제로 이승만은 이 각료팀을 선거위원회로 구성해서 UNTCOK가 어떤 용도에 쓰든지 그 임의에 맡기겠다는 제의를 했다. 그러나 그 제의는 UNTCOK에 의해 묵살되었다.¹⁹⁹

반면 이승만 진영이 단정수립을 적극적 펼쳐나가는 것과는 반대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던 金九, 金奎植, 趙素昂, 金昌淑, 趙琬九, 洪命憲, 曹成煥 등 7인은 3월 11일 남북 협상으로 민족자결을 시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²⁰⁰

또한 3월 25일 북조선 민주주의 통일전선 중앙위원회는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4월 14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의 정당·사회단체들과의 연석회의에 초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²⁰¹ 3월 27일 김구, 김규식 앞으로 金日成, 金枋奉의 연서로 된 서한²⁰² 이 인편에 의해 전달되었다.²⁰³

197) G-2 WS #130, G-2 W/S 권5, 81-82쪽.

198) G-2 WS #130, G-2 W/S 권5, 82-84쪽.

199) 국편, 앞의책, 27쪽.

200) 송남헌, 앞의책, 540쪽.

201) 조순승, 앞의책, 168쪽.

202) 답장에는 김구, 김규식의 서한을 받았다고 써있다.

이에 대해 남한에서는 곧 남북협상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의 연합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한독당과 민족자주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파 정치세력들이 統一獨立運動協議會를 구성했다.²⁰⁴

김구, 김규식의 남한단정반대론의 근거는 물론 민족분열을 방지하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김구의 경우 단독정부 수립은 민족분열일 뿐만 아니라 UN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에 의한 신탁통치였고, 앞으로 세워질 남한정부가 미국의 예속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해되었다. 김구는 “독립이 원칙인 이상 독립의 희망이 없다고 자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왜정 하에서 충분히 인식한 것과 같이 우리는 통일정부가 가망이 없다고 단독정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통일정부 수립운동이 독립운동의 연장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²⁰⁵

4월 13일 김규식은 협상조건으로 북측에 6개항을 제의했는데 이는

“첫째 스탈린의 초상화를 모든 공공장소에서 치울것, 둘째 평양회담은 예비적인 회담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첫번째 공식회담은 관련된 모든 당이 참가 서울에서 열려야 한다. 세째, 북한은 남한에서 선출되는 200명의 의원에 참가할 대표 100명을 선출, 네째, UNTCOK는 북한에서의 선거감시를 위해 적어도 한 명이 초청되어야 함, 다섯째, (평양이던 서울이던) 회담은 독립을 획득하려는 방법만을 모색해야 함, 여섯째, 점령군의 공동철수를 위해 군대철수 조건에 관한 미·소양국회담을 시작하도록 소련에게 요구해야 한다.”²⁰⁶

203) 송남헌, 앞의책, 541쪽.

204) 강만길,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일보사, 1987, 207-208쪽.

205) 강만길, 위의책, 207-208쪽.

206) G-2 WS #135, G-2 W/S 권5, 163쪽.

는 것이었다.

4월 14일 북한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로부터 김규식은 4개항의 내용을 전달 받았다.

첫째, 정부수립은 한국정부의 구조를 결정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자유·국민·보통 선거로 행해져야 한다. 둘째, 우리는 독점적인 자본주의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독재를 허용하지 않으며 진정한 민주정부를 지지하고 수립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한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떠한 나라도 우호적으로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 후 김규식은 5번째 원칙인 군대철수 문제를 추가했다.²⁰⁷

김구, 김규식 일행이 평양에 머문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공식적인 회의나 협상은 세 번있었다. 그것은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최된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와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최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그리고 이른바 4金 會晤이었다.²⁰⁸

이 시기 UNTCOK의 잭슨(호주)과 패터슨(캐나다)은 김규식과 김구에게 남북협상에 참석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회의가 성공할 경우 단독선거를 연기시킬 것을 약속했다.²⁰⁹

그러나 김구, 김규식이 제의하고 참가했던 남북협상에서의 합의사항은 남한에서는 이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정치세력에 의해 5·10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실행

207) G-2 W/S 권5, 163-164쪽.

208) 강만길, 앞의책, 213쪽.

209) Jacobs to Marshall, 1948.4.30, FRUS 1948, VI, 1180 ; NYT, 1948.4.21, p.14 ; NYT, 1948.4.22, p.2.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81쪽에서 재인용.

될 수 없게 되었고, 북쪽에서는 협상에 참가한 정치세력이 남쪽의 단독선거와 단정수립에 대응하기 위한 또하나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나아감으로써 무산되었다.²¹⁰

선거일의 공식적인 결정(3·12) 이후 UNTCOK는 선거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UNTCOK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선거실시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선거의 자유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경찰과 청년단체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 문제는 5·10 선거기간 내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UNTCOK 제24차 전체회의(3.15)의 의사일정은 첫째, 선거법, 둘째, 법안 시행, 셋째, 선거의 공포와 선거에 대한 교육, 넷째, 정치범이었다. 위원들은 주로 두번째 사항인 “법안시행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마네(프랑스)는 전에 경찰력이 군정당국의 한 부처에 놓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하지가 제1분과위원회를 방문한 결과 생각이 바뀌었다. 무길(시리아)은 이러한 재편성을 주장하는 데 앞장섰고, 반면 폴-봉쿠르(프랑스)는 경찰의 통솔을 변경시키는 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투표 결과 시리아는 정부의 한 부처 아래 경찰을 두는데 찬성한 유일한 나라였다. 프랑스, 중국, 필리핀은 반대투표를 했고, 오스트레일리아, 엘살바도르, 인도는 기권했다. 비록 캐나다는 일시적으로 UNTCOK에서 철수했지만, 패터슨은 이 회의에 참석했고 다른 모든 회의에도 참석했다.²¹¹

한편 UNTCOK는 청년단체 문제의 토론에서 “경찰은 청년단체 지도자들에게 그들 구성원의 활동이 UN기구의 면밀한 조사하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청년단체는 정치단체나 비정치단체로서 등록

210) 강만길, 앞의책, 217쪽.

211) 국편, 앞의책, 25-26쪽.

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²¹²

제25차 전체회의(3.16)에서 UNTCOK는 제2분과위원회에 선거 실시에 대한 자문을 계속하고 선거 실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견해와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UNTCOK는 선거기간 중의 참관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제4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정치범의 사면에 있어 일반의 안전과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많은 수의 수감인들을 석방하기를 군정당국에 원했다.²¹³

제26차 전체회의(3.17)에서 위원단은 의장직을 매 15일마다 국가의 알파벳 순으로 된 명부에 따라 교대하기로 결정했지만,²¹⁴ 실제로는 필리핀대표의 제안으로 첫 의장은 다수결에 의하여 폴-봉쿠르(프랑스)가 선출되었다.²¹⁵ 제1분과위원회의 선거의 자유분위기 달성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건의안의 제12항을 보면 “앞으로 UNTCOK는 청년단체원들 중 어느 누구도 선거구의 접근을 강력히 제제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²¹⁶

한편 이 시기 미군정은 경찰휘하에 공식적으로 향보단을 설치하였고,²¹⁷ 이

212) 국편, 앞의책, 26쪽.

213) 국편, 앞의책, 26-27쪽.

214) 국편, 앞의책, 27쪽. (알파벳 순서대로 면(1)오스트레일리아 (2)엘 살바도르 (3)프랑스 . . . 순)

215) UNTCOK공보 제48호, 1947.3.17.

그러나 UNTCOK 미국연락장교 존 워커링은 26차 회의기록 요약 (대한민국사자료집1, 27쪽)에서 추첨으로 프랑스가 배정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미국의 지지국인 프랑스를 의장국으로 내세운 의도를 갖추기 위해서 였다. UNTCOK의장은 많은 재량권을 보유했기 때문이었다.

216) UNTCOK문서 A/AC.19/53, 1948.3.18.

217) 이태일, 앞의책, 193쪽.

단체는 곤봉과 도끼로 무장, 시골을 휩쓸고 다니면서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모조리 탄압하는 무법의 청년 갱단으로 타락하게 된다.²¹⁸

따라서 향보단의 설치의 목적은 미군정이 UNTCOK의 선거의 자유분위기 달성을 위한 건의안 12항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이었다. 실제로 향보단은 선거인명부 등록기간부터 경찰과 더불어 활동하였고, 5·10선거시 전국의 각 선거구 마다 배치되어 활동하였다.

제27차 전체회의(3.20)에서 선거참관 방법에 대한 제4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의 보고가 채택되었고, 위원단은 3개의 분과위원회(1,2,3 분과위원회)의 기존기능을 인수할 “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회의에서 잭슨(오스트레일리아)은 “제2차 잭슨결의안”을 제의했는데, 이 결의안은 “UNTCOK는 선거참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1948년 4월 25일 이전에 발표할 것을 결의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보류되었다.²¹⁹

한편 3월 25일 국회선거위원회는 폴-봉쿠르의장에게 선거연기를 제의하는 서한을 보냈고 3월 26일 폴-봉쿠르의장은 중앙선거위원회의 사무총장 金奎弘에게 다음과 같이 구두로 말했다. “우리는 논평할 것이 없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지장군의 소관임을 말하고 싶습니다.”²²⁰ 3월 27일 폴-봉쿠르는 하지에게 서한을 보내 “나는 선거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얘기했소만, 주한 미군사령관이

218) Jacobs to Marshall, 1948.5.7, 국무성기록, 895.00/5-748 ; Time 1948.5.17, p.33 ; Dept. of State, Korea 1945 to 1948, p.15 ; Henderson, Korea, p.157 ; Dallin, Soviet Russia and the Far East, pp.311-312 ; McDune and Grey, Korea Today, pp.227-228.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81쪽에서 재인용.

219) 국편, 앞의책, 27쪽.

220) 국편, 앞의책, 28쪽.

선거일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선거일의 연기는 전적으로 당신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했소.”²²¹ 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선거일 연기에 관한 논의는 미국측으로부터 사전에 시도되었다.

미국측 연락장교(존. 웨커링준장)와 UNTCOK 법률고문관 사이의 선거일 변경의 논의는 슈라이버(UNTCOK 법률고문관)가 한국에서 떠나가기 전날 밤, 1948년 3월 18일쯤 결정되었다. 슈라이버가 떠나기 전후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 왔는데, 추천의 논란²²² 이 선거일 연기의 이유가 되었다.²²³

따라서 제28차 전체회의(3.30)에서 선거일연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연기 찬성에는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연기반대에는 시리아, 엘 살바도르, 필리핀, 중국이었고 캐나다는 기권하였다. 가장 요란했던 그룹은 연기에 반대하는 그룹이었는데, 이는 루나(필리핀)가 주도했다. 루나는 사령관이 연기를 ‘독단적으로 명했다’는 말을 듣고, ‘잭슨에 합세’하거나 ‘귀국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발레(엘 살바도르)의 지지를 받았다. 루나는 이 문제에 대해 즉시 투표하기를 원했지만, 폴-봉쿠르는 위원들이 하지의 결해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회담 초안을 준비하겠다고 제의했다.²²⁴

폴 봉쿠르의 회담 초안은 제29차 전체회의(3.30)에서 승인되었고, 그 내용은 “본인(폴-봉쿠르)은 선거가 3월 12일의 결의안에서 채택된 대로 5월 9일자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UNTCOK의 희망임을 귀하에게 통고하도록 지시받았습니

221) UNTCOK 문서 A/AC. 19/58/Add.

222) 5·10선거는 우익간의 후보자 난립으로 인해 우익상호간에 더 많은 후보자 조정시간을 필요로 했다.

223) UNTCOK문서 A/AC.19/58/Add.3 (1948.3.30), 대한민국사자료집 2, 212쪽.

224) 국편, 앞의책, 28-29쪽.

다.”라고 되어 있다.²²⁵ 위원단은 폴-봉쿠르 의장이 하지에게 선거를 1948년 5월 10일로 연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구두로 말하도록 인가했다.²²⁶

한편 제30차 전체회의(3.31)에서 위원단은 제2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토의했다. 제2분과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존속기간 내내 이루어졌던 면담에서 발췌한 의견조사서를 작성했고, 보고서는 제2분과위원회 의장인 잭슨(호주)과 간사인 밀러(호주)에 의해 집필되었다.²²⁷

이 보고서에 대해 미국측 연락장교인 존. 웨커링은 “나는 많은 시간을 보고서의 일부 내용 때문에 밀러와 싸웠다. 물론 내가 그것을 문서화시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좌익성향의 3페이지를 꺼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썩 좋은 일이 못되었다. 나는 그의 연구성과물에 반대한다고 그에게 말하였다.”²²⁸ 라고 언급하였다.

제2분과위원회의 보고서는 중국, 필리핀, 프랑스 대표들의 공격을 받았으나,²²⁹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승인되었고, 제4분과위원회의 선거참관 계획안 역시 승인되었다. 계속해서 군 숙식 비용문제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 졌고 이 토

225) 국편, 앞의책, 29쪽.

226) 국편, 앞의책, 29쪽.

5월 9일에는 일식현상이 일어나며 한국인들은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였다. 이승만은 일식이 일어나도 관찮으니까 선거를 연기하지 말자고 주장하였다.(대한민국 건국 10년지, 296쪽)

227) 국편, 앞의책, 29쪽.

228) Spec Report 139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대한민국사자료집 2, 62-63쪽.

229) 마네(프랑스)는 그의 생각에는 중국, 그리고 필리핀이 프랑스와 동일한 고충을 갖고 있었는데, 즉 그들은 미국의 관점을 알고 싶어했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 했다고 미국 연락장교에게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는 미국의 관점을 알기 위해 자체회의까지 하였다.

의에서 미 행정관 R. S. 하우스너는 위원단이 한국(수도호텔, 국제호텔)에 6개월 머물게 되면 두 호텔의 체류비용을 UNTCOK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UNTCOK의 위원들은 전부 격노하였고, 무길(시리아), 마네(프랑스) 그리고 온도이(필리핀 행정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임명하여 하우스너가 작성한 증거의 세부비용과 그 비용의 용도를 검토하도록 했다.²³⁰

제31차 전체회의(4.3)에서 선거일을 5월 10일로 연기하자는 하지의 제안이 토의되어 승인되었다. 회의 뒤에 위원단은 그 결정을 공포하는 공보 제53호를 4월 6일자로 발표했다.²³¹

이 시기 UNTCOK의 남한 단독선거 감시결정 및 그에 따른 활동에 관해 G-2 W/S는

“(선거의 감시는) 중앙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와의 항시적 연결에 의해, 지방에서는 감시그룹을 통해, 더 나아가 UNTCOK의 감시국과 미당국의 그것과의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UNTCOK 지휘관(하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점등을 표현했는데, 선거 결과가 총회에 제출될 때 소련의 방해를 예상하고 완벽한 선거를 위한 시도가 UNTCOK에 의해 행해졌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소련의 논쟁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²³²

라고 기록하고 있다.

31차회의 이후 UNTCOK는 4월 5일부터 5·10선거의 감시국면에 들어간다.

UNTCOK는 제27차회의에서의 결정²³³에 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정된 지

230) 결국 위원단은 비용문제에 걸려 5·10선거 이후 정부수립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고 상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231) 국편, 앞의책, 30쪽.

232) G-2 WS #132. G-2 W/S 권5, 114쪽.

233) “주위원회”의 설치와 선거감시가 제주도를 포함한 각 지방에서 선거 전 기

역에서 선거업무 수행을 각시할 현장감시단의 설치를 결정했다. 수송(철도)과 편의시설은 미군정에 의해 제공되었고, 감시단은 총칙에 따라 대표 2명, 비서 1명, 요지기자 1명, 한국인통역 1명, 타이피스트비서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UNTCOK는 세 개의 감시단으로 편성되어, 4월 5일 부터 10일까지의 투표자 등록기간 동안 첫번째 감시활동을 실시하였다.²³⁴

1차 감시활동이 끝난 후 “주위원회” 2차회의에서 감시단의 업무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때 무길(시리아)은 선거등록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쌀)배급표 회수에 관한 소문에 대해 조사하면 사람들을 협박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배급표 문제는 선거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었다. 폴-봉쿠르(프랑스)는 주위원회에서 지적인 미흡한 점들이 선거 전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의 후 위원들은 “폭력 사용에 대한 위협” 문제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고, 2차 감시활동 때 그 문제를 재차 검토할 것을 의장 싱(인도)의 제안으로 결정했다.²³⁵

또한 1차참관여행 중 “주위원회가 주목한 결함사항”을 위해 4월 17일 군정장관 딘을 청문하기로 결정했으며, UN본부에 문서를 이관하는 문제로 토론이 3차 회의(4.15)까지 계속되었다.²³⁶

결국 각 감시단의 주별감시의 포괄적인 요약기록은 간사가 택한 노트에 근거해서 초안이 작성되어야 하고, UN본부인 LAKE SUCCESS로 기록을 보내기 전에

간동안 실시된다는 사항

234) UNTCOK문서 A/AC. 19/W.

235) UNTCOK문서 A/AC. 19/SC. 4/SR 2, 1948.4.15.

236) 국편, 앞의책, 80-81쪽.

UNTCOK전체회의의 승인을 얻는 것에 대해 2표의 기권과 4표중 2표의 득표로 통과되었다.²³⁷

주위원회는 4차회의(4.17)에서 군정장관 딘을 면담하였다. 위원들에 의해 몇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첫째, 선거기간 중 언론 및 집회의 자유, 둘째,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해 선거기간 중 “洞” 및 마을의 長들의 역할 정의, 정의, 세째,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청년단체들이 협박할 가능성, 네째, 치안방법들에 관한 것이었다.²³⁸ 등록 감시과정에서 위원들은 한국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고, 특히 국민들에게 쌀 배급표를 회수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강요하는 압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것에 대해 딘은 4월 13일자²³⁹ 로 미군과 한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쌀) 배급표 분배를 중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폴-봉쿠르(프랑스)는 행정구역장에 관한 두번째 문제점 제기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보면 선거등록에 관한 이들의 권유가 문제가 없지만, 투표시에는 그런 역할들이 위험스럽게 될 수도 있었고 행정구역의 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이 곧 바로 그들을 지배해서 선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정장관 딘은 행정구역장이 그들의 역할을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공무원 또는 경찰에 의해 선거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돈을 받는 소수의 반대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선거위원회의 위원을 보호하고 선거당일 투표소가 공격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²⁴⁰

237) UNTCOK문서 A/AC. 19/SC. 4/SR. 3(1946.4.16).

238) 국편, 앞의책, 81쪽.

239) 투표자 등록기간은 3.30-4.10 까지였고, 이 때는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다.

폴-봉쿠르(프랑스)는 청년단체의 유권자 협박에 관한 문제제기에서 중도계 후보자에 관한 사례를 인용, “청년단체들은 우익계열이 아닌 국민들이 입후보하는 것을 막기위해 열심히 활동했다. 이들 단체들의 협박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시를 내려야 하고, 선거에서 단일 인물이 입후보해야 된다는 사실이 미국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UN측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무길(시리아)은 경찰청은 각 경찰서장에게 청년단체들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UNTCOK에 보고했지만, 감시여행 동안 경찰서장과 그 문제에 관하여 면담했을 때, 그들은 그런 지시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정장관 딘은 언어장벽 문제나 면담자의 신뢰도 문제라고 말했고, 무길과 같은 감시단인 패터슨은 “언어소통의 문제는 없었으며, 3개 지방의 경찰서장은 청년단체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경찰청장으로 부터 받지않았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 감시단의 일원이었던 마네(프랑스)는 “한국경찰이 때때로 일본치하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패터슨(캐나다)은 “좌익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감시단에 자유롭게 보고됐으나, 우익주의자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당국이 배려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패터슨은 “민족청년단과 대동청년단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후보자는 내세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군정장관 딘은 “대동청년단은 정치 단체이지만 민족청년단 241 은 정치 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²⁴²

한편 UNTCOK는 1948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2차감시활동을 실시하였다. 2차감시활동은 1차감시단의 3개 그룹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제1감시단은 중

240) UNTCOK 문서 A/AC. 19/SC. 4/SR. 4 (1948.4.17).

241) 민족청년단 ; 이범석에게 미국이 돈과 장비를 대주면서 육성한 청년단체

242) 앞의주(240)와 동일.

국, 인도, 엘 살바도르, 프랑스, 필리핀, 제2감시단은 캐나다(패터슨), 중국, 엘 살바도르, 제3감시단은 프랑스, 인도, 시리아(무길), 제4감시단은 프랑스, 호주(잭슨)로 수정 구성되었다. 제1감시단은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활동하였고, 제2감시단은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 제3감시단은 부산과 경남.북, 제4감시단은 전라남도에서 활동하였다.²⁴³

감시단 수정 구성의 결과는 1차 감시활동에서 같은 감시단 소속이었던 시리아와 캐나다를 갈라 놓았고, 그것은 군정장관 딘이 1차 감시활동 결과의 토의에서 시리아와 캐나다의 동시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2차 감시활동의 내용이 토의되었던 주위원회의 5차회의(4.27)의 기록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몇 건의 사례보고를 제외하면 회의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²⁴⁴

2차 감시활동이 마감된, 4월 28일 UNTCOK는 제33차 전체회의에서 제22차 전체회의(3.12)결과 채택된 폴-봉쿠르-무길결의안을 토의하였고, 리유완(중국)이 제의한 “남한에 합당한 정도의 자유분위기가 존재한다는 데 만족하고 . . . 주한 미군사령관이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어질 선거를 참관할 것을 확인하고자 결의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중국, 호주, 필리핀, 엘 살바도르, 인도가 찬성하였고, 캐나다, 프랑스, 시리아가 기권하였다.²⁴⁵

이 결과는 주목할 만한 사실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폴-봉쿠르(프랑스)의 태도 변화이다. 원래 폴-봉쿠르는 UNTCOK의 모든 활동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잭슨(호주)의 활동을 혐오하였으며, 동료 위원들을 설득하여 그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UNTCOK 감시단의 활동에서 폴-봉쿠르는 잭슨과 한조였으

243) UNTCOK문서 A/AC. 19/W. 42/Add. 5 (1948.4.16).

244) 국편, 앞의책, 82쪽.

245) 국편, 앞의책, 75-76쪽.

나, 1.2차 감시활동이 끝난 시점에서 폴-봉쿠르와 잭슨은 입장을 뒤바꾸고 있다. 즉 폴-봉쿠르는 '선거를 위한 합당한 정도의 자유분위기를 발견 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1.2차 감시활동의 결과 그의 견해가 달라졌음을 나타내 준다. 둘째, 잭슨은 그의 1(3.9), 2(3.20)차 결의안을 통하여 남한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결의안을 포기하고 찬성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국에서 새로운 훈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잭슨은 6월초 한국(UNTCOK)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외교적 압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 사례였다.

제34차 전체회의(4.28 오후)에서는 UNTCOK의 보고서 작성문제가 토의 되었다. 이 때 무길(시리아)은 UNTCOK가 5월 12일 한국에서 철수하여 도쿄로 가서 그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고, 이 결의안에 대한 토의는 35차 전체회의(4.29)에서도 계속 되었다. 폴-봉쿠르(프랑스) 혼자만 결의안에 반대했다. 폴-봉쿠르는 미국 연락장교에게 남북협상의 밀사가 사령관이나 그 대표를 통해 미·소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려는 이 때, UNTCOK의 출발을 발표하는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에도 매우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미 연락장교에게 인도, 필리핀, 엘 살바도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²⁴⁶

또한 제36차 전체회의에서 무길(시리아)은 "위원단이 서울에 연락단을 남기고 1948년 5월 15일 도쿄로 갈 것"을 제안하는 결의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폴-봉쿠르는 미군과 UNTCOK의 철수를 요구하는 남북지도자 회담의 밀사가 도착함에 따라 당시 UNTCOK의 철수발표가 초래할 수 있는 악영향을 지적했고, 마네(프랑스)는 매우 강력하고, 잘 추론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투표는 시리

246) 국편, 앞의책, 76-78쪽.

아, 인도, 엘 살바도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가 결의안에 찬성하고 프랑스가 반대하는 것으로 쉽사리 결정되었다.²⁴⁷

이 시기 UNTCOK의 선거 감시활동에 대하여, UN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Trygve Lie)는 “위원단의 감시방법은 선거현장 감시를 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사무요원이 결정했으며, 대부분의 UNTCOK 감시단들은 미군사요원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선거를 감시하였다. 한두 팀만이 그런 경호를 받지 않았으며, 에스코트를 받지 않은 팀들만이 자유로운 선거분위기에서 선거과정을 감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⁴⁸ 또한 상당한 양의 선거소송 사건이 접수되어 미국 당국자들에게 이첩되었다. 접수된 선거소송 사건 및 불평에 대한 미국 연락장교의 회답²⁴⁹ 을 요약하면 결과적으로 선거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거기간 중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사망사건 포함)도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UNTCOK에 접수된 사안 중 부정·불법·타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3차 감시활동 기간(5.7-11)에 접수된 이승만의 선거경쟁자(동대문 A선거구)인 최능진의 입후보등록 취소건²⁵⁰ 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동대문 A선거구에 이승만의 경쟁자로 출마한 최능진(崔能鎭)은 5월 7일 경찰이 그의 후보자격이 기각(거절)되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5월 8일 조간신문에 발표되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그의 후보기각 이유를 그의 입후보를 추천한 사람 중 57명이 강박상태에서 서

247) 국편, 앞의책, 78-79쪽.

248) 존 할리데이, 앞의책, 101-102쪽.

249) 미국연락장교 존 워커링이 UNTCOK 주위원회 수석간사 밀러에게 보낸 메모.

250) 대한민국사자료집 2, 725쪽. 이것은 공식문서 번호가 주어지지 않았고, 메모(MEMORANDUM)였다.

명을 했고, 그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씨는 이 57명 중 일부 사람이 경찰서에서 오후 5시에서 새벽 2시까지 감금당했었으며, 4명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5월 9일 오전 11시에, 최능진은 그의 청원서를 미군정의 헬릭(Hemlick) 장군에게 제출했고, 헬릭은 그 청원서를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큰 소리로 읽은 후, 군정장관이 이미 그를 돕고있다고 말했다. 최능진은 이승만이 그 선거구에서 당선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벽보를 떼어내고, 선거등록위원회와 선거위원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주:저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으며, 이승만을 대신해 전단을 뿌렸다고 말했다. 또한 최능진은 선거법에 따라 각 후보는 선거일 5일전에 선거사무실(ELECTKAL OFFICE)에 참석하는 사람을 지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거위원회는 그에게 선거사무실의 위치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의 서한(선거사무실에 참석하는 사람의 명단)을 선거함(ELECTKAL BOX)에 옮겨놓으라고 말했다. 최능진은 선거함의 위치를 물었으나, 선거위원회의 의장은 모른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목요일(5.6)과 금요일(5.7)에 선거사무실에 그의 사진을 가져다 놓으라고 했으나 선거사무실의 소재를 몰랐기 때문에 가져다 놓을 수가 없었다.”²⁵¹

이후 최능진은 공식마감 뒤에 후보자로 인정되었으나, 이것은 국회선거위원회에 의해 다시 검토되었고 결국 부정등록으로 인정되어 후보자자격을 상실했다.²⁵²

남한의 혼란은 5·10선거 전주(주:저자 5.3-5.7:UNTOCOK 2차감시 활동과 3차감시활동 사이)에 그 절정에 달했고, 협박과 구타, 강도, 투옥 등도 매일 다반사로 일어났다. 미군정은 일반 주민에 대하여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경찰과 청년단체들의 활동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²⁵³

251) UNTCOK문서 A/AC. 19/5C. 4/15/Add.8. 최능진과 UNTCOK의장 무길(시리아)의 대담 중에서.

252) 국편, 앞의책, 86쪽.

253) McCune and Grey, Korea Today, pp.228-230 ; Gordenker,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pp.92-93. 제임스 I. 매트레

이 때 UNTCOK는 주위원회 6차회의(5.3) 선거참관계획인 3차 감시활동계획을 채택했다.²⁵⁴ 이 계획으로 2차 감시단의 4개 그룹은 9개 그룹으로 세분되었고, 2차 감시활동에서 4감시단으로 활동하였던 무길(시리아)²⁵⁵은 1감시단(서울, 경기도, 강원도)으로 옮겨졌고,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3차 감시활동을 실시하였다.²⁵⁶ 심각한 선거부정이 그 선거구 중 몇 개소에서 발견되었다. 미군정과 이승만계가 발표한 공식적 투표자 수는 남한 인구의 1/3, 한국 전체 인구의 1/4에도 못미치는 숫자로 집계되었고,²⁵⁷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1948년 5월의 남한선거(5·10)는 주민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는 크게 실패한 것이었다.²⁵⁸

선거감시활동을 마감한 5월 12일 UNTCOK는 39차 전체회의를 열었고, 중국 상해에서 보고서(UN본부에 보낼 UNTCOK의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5월 13일 오전, 주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UNTCOK는 “남북지도자회담”에 참석했던 김구의 견해를 들었고, 동일 오후의 제8차회의에서 김규식과 여운형의 실제인 여운홍의 견해를 들었다. 주위원회 8차회의가 끝나고, 동일(5.13) UNTCOK의장이자 주위원회의장인 야신 무길(시리아)은 선거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²⁵⁹ 그 내용은

“기본적인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단이 남한에서의 선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했다. 4월 29일에, 위원단은 이러한 목적

이, 앞의책, 181-182쪽에서 재인용.

254) 국편, 앞의책, 86쪽.

255) 무길(시리아)에 의해 이승만의 불법선거 사례가 보고되었다.

256) 국편, 앞의책, 89쪽.

257) 존 할리데이, 앞의책, 102쪽.

258)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책, 183쪽.

259) 국편, 앞의책, 79-82쪽.

을 달성하기 위한 군정단국의 원조와 선의에 만족을 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공포한 선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했다.

남한과 북한의 선거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전부 또는 대부분의 기존의 정당이나 단체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국민적 선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단은 잘 알고 있었다. 위원단의 위원들은 한국 문제에 관한 관심사가 항상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거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들 중 일부사람들은 이 선거의 결과가 한국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했고, 비록 그들이 그런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용어에 대해 유보조항을 붙여서, 그들은 선거를 '확연한 우익주의자의 선거'라고 불렀다. 위원단의 임무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 일부 위원단의 위원들은 선거가 한국이 통일을 하고 주권을 찾을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이 선거를 우익주의자들의 선거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부른다면, 위익주의자들이 아닌 측이나 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소를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했다.

일부 대표들은 선거 실시 방법에 대해, 선거법과 위원단이 추천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투표소 안이나 주변에서 향보단의 단원들을 목격했다. 이러한 corp들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들로 조직되었다. 그들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일부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어떤 투표소에서는 투표장안에 경관이 들어와 있는 적도 있었다. 청년단원들 (혹자는 제복까지 착용) 역시 투표소 안이나 부근에 있었다. 우리들 중 혹자는 수개의 투표소에 있어 비밀투표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체로 선거는 아주 원만하고,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다. 사실, 몇몇 군데에서는 투표율이 아주 높아서 효율성이란 면에서 보면 특징적인 것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지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주의와 유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런 감시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이 후에 날 것이며, 총회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위원단은 선거 감시가 위원단 임무의 첫 단계만을 완결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선출된 대표들에게 즉시 국민정부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아직 일임하지 않았다.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들이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선거에 반대한 측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바란다.

위원단은 선거 감시를 특별하고 명백한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총회 보고서의 전반부에 쓰기로 결정했다. 위원단은 보고서 작성에만(작성단계에) 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한국밖의 어느 곳에서 이 보고서를 쓰기로 했다. 동시에, 위원단이 없는 동안 서울에 연락단을 남겨놓기로 했다.(1문장 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단은 가능한 한 한국 밖에서 보고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맥아더 장군에 대하여, 위원단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²⁶⁰ ”

라고 되어 있다.

이 성명서 전문은 UNTCOK 공보 59호로 신문에 발표되었다.²⁶¹ 신문 발표문은 원문과 언어상의 뉘앙스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²⁶²

260) UNTCOK 공보 제59호(영문원본).

261) 동아일보, 1948.5.14자. 경향신문, 1948.5.15자.

262)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몇 군데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안은 신문발표문.

남한과 북한의 선거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전부 또는 대부분의 기존의 정당이나 단체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국민적인 선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단은 잘 알고 있었다. (금번 선거는 조선의 남북을 포함치 않으며 현재 정당 및 단체의 대부분을 포함치 않았다는 의미에서 전국적인 선거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위원단의 위원들은 한국 문제에 관한 관심사가 항상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거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다. (朝委 전대표는 조선 문제에 관한 관심에 있어서 언제나 만장일치였지만 금번 선거를 찬양하는데 있어서는 그들간에 어떠한 의견의 상이가 있다.) 그들 중 일부사람들은 이 선거의 결과가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했고, 비록 그들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가 남한에서만 실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표들 중에는 금번 선거의 결과가 조선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대표도 있으며 그들이 설사 이처럼 의심을 포기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남조선에 있어서의 선거를 전국적인 것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무길(시리아)의 성명서는 주위원회 9차회의(5.14 오전)에서 중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은 루나(필리핀)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²⁶³ 무길(시리아)은 어떤 식으로도 자신의 의향을 위원단에 회부할 생각이 없으며, 그 신문 성명서가 단지 자신의 견해라고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²⁶⁴

무길의 성명서에 대해 UNTCOK 수석비서관 슈미트는 “UNTCOK의장은 공보를 발함에 있어 ‘보통 많은 재량권’이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²⁶⁵ 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보아 미군정하의 남한에서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한 UNTCOK의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저지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UNTCOK는 주위원회 10차회의(5.14 오후)를 끝으로 선거감시활동에 관한 일정을 끝내고, UN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 소규모의 연락단을 잔류시키고 상해(중국)로 철수한다.

4. 활동의 성격

이상 1948년 11월 14일 UN에서 결성된 UNTCOK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소총회의 결정을 전후하여 남북 총선거 추진기와 남한 단독선거 감시기로 구분하여

대표들이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선거에 반대한 측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바란다. (각 피선의원들은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수립에 있어 선거를 반대하던 분자들의 지지를 얻도록 진력할 것을 열망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원문에서 삭제된 부분은 명백히 고의적인 것으로써, 그 문장은 맥아더가 UNTCOK의 입국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263) 국편, 앞의책, 82쪽.

264) UNTCOK공보 63호(1948.5.14).

265) 국편, 앞의책, 83쪽.

살펴보았다.

UNTCOK는 남북총선거 추진기간 즉, 총회의 위임사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수행했다고 보여진다. 이 기간에 UNTCOK는 총선거 실시를 위한 남북주둔군 사령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선거 주관자로서의 소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또한 김구, 김규식의 남북한 정치지도자 회담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대두된 것은 바로 북한 지역에서 UNTCOK를 비합법위원단으로 간주하여 UNTCOK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과 남한지역의 지도자급 인사 청문 결과, 미군정과 이승만 진영이 남한 단독선거의 즉각적인 실시를 주장하고 나온 점, 그리고 이 밖에 김구, 김규식 등을 중심으로한 민주주의 세력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한마디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만한 정치·사회적 여건과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과 조건 하에서 UNTCOK는 UN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타개책의 일환으로 통일 한국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김규식, 김구의 남북한 정치지도자 회담 추진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은 계속 남한 단독선거의 즉각 실시를 주장하며 UNTCOK에 압력을 가하였고 미군정은 미 본국을 통해서 UNTCOK 구성국가들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UNTCOK 내부에도 자연히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측과 총회의 위임사항을 고수하려는 측으로 대립되었고, 결국 2월 6일 한국문제를 UN 소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남북 총선거 추진기 즉, 총회 위임사항을 추진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UNTCOK는 독자적이고도 능동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총선거 추진기 즉, 총회위임 수행기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UNTCOK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입장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자국과 정치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들로 UNTCOK를 일방적으로 구성하여 자국의 의도를 남한에서 관철시키려 노력하였지만, UNTCOK는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독자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선거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즉, 한국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던 것이다.

UN소총회는 소련측의 강력한 반대속에 2차 UN총회(1947) 2차 회기에 신설되었고, 이 시기에 이르면 UNTCOK가 총회의 위임사항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력 속에서 남한 단독선거 실시라는 권한외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소총회의 결정 이후, UNTCOK는 위원단이 원하지 않았던 남한 단독선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소총회의 결정은 UNTCOK에 권고하는 성격에 불과하였고, 최종결정은 위원단이 내려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UNTCOK의 소총회 파견대표들이 UN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UNTCOK의 비공식모임을 통하여 3월 1일 선거일(5·9)을 공포함으로써 UNTCOK의 선택권을 사전에 봉쇄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행동은 UNTCOK의 태도와는 관계 없이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명백한 표시였고, 이것은 UN총회의 위임 혹은 소총회의 위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따라서 UNTCOK는 3월 1일자 주한미군사령관의 선거일 공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UNTCOK의 이러한 발표가 효력이 없게 되자 UNTCOK 내부에는 잭슨(호주)의 1차 잭슨결의안 즉, 일단 한국에서 철수하자는 주장을 지지하는 그룹과 미국측에 동조하는 그룹으로 대립되었고, 선거 감시에 대한 결정은 4표의 찬성

으로 3월 12일 결정되었다. 소총회 결정 이후 남한 단독선거 감시기에 미군정은 UNTCOK의 선택권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위임사항인 선거주관의 책임마저 UNTCOK로 부터 박탈함으로써 UNTCOK에게 수동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UNTCOK 상임의장, 사무총장 등 반미성향을 보이던 주요 구성원들은 본국으로 소환되거나 귀국하였고 캐나다(패터슨)는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여 UNTCOK활동을 포기하는 한편, 잭슨(호주), 무길(시리아)과 함께 남북한 정치지도자 회담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남한 단독선거 감시기에 이르면, 이미 UNTCOK의 반미적인 구성원들이 거의 본국으로 소환되거나 귀국한 상태였고, 그 후임은 예외 없이 친미적인 인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UNTCOK의 인적 구성은 초기의 반미적인 성향에서 친미적인 성향으로 완전히 역전되었고, 점차 미군정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TCOK는 3차례의 선거 감시 활동을 통하여 UNTCOK는 가장 대표적인 불법사태인 이승만의 선거부정 등 많은 수의 선거부정을 적발하였고, 단독선거의 결과 탄생하게 될 정권을 국민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보를 발표하였다. 비록 무길(시리아)의장이 개인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지만, 이는 선거 평가에 대한 더 이상의 성명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고려해 볼 때, 그 공보는 5·10선거에 대한 UNTCOK의 의견이기도 했다.

한편 5·10선거 후 위원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였다. 미군정은 UNTCOK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경우 숙소인 수도호텔과 국제호텔의 체류비를 위원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UNTCOK는 결국 5·10 선거 이후 정부수립까지의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 단독선거 감시기의 UNTCOK의 활동은 미군정

에 의해 적극적인 활동이 저지되었고 결국 수동적인 역할을 강요 받았지만, UNTCOK는 미군정의 요구에 부단히 저항하였다.

한편 선거를 위한 자유분위기 확보를 위해 UNTCOK는 다방면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UNTCOK의 일부 위원이 지원했던 남북한 정치지도자 회담도 5·10 단독선거의 강행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상 UNTCOK 활동의 이러한 한계는 UNTCOK의 권한 뿐만 아니라 UN총회의 위임사항까지도 무시하는 미국과 미군정의 독단 하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고, 미국의 일관된 의도의 관철이라는 상황과 남한 점령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미군정의 정책을 고려할 경우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UNTCOK가 예정된 잔치에 초대되었다 할지라도(사실 미국은 UN의 개입 여부에 관계 없이 남한 단독선거를 치를 준비를 완료했다.) 위원단은 들러리 역할을 단호하게 거부하였고, 시종일관 통일한국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과 미군정은 이러한 UNTCOK의 적극적인 활동에 부담을 느꼈고, 따라서 5·10선거 이후 단독정부 수립기에 UNTCOK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UNTCOK의 결성 경위와 활동 및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모스크바협정에 따라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시킨 후 한국문제를 UN에 이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한 UNTCOK의 결성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UN 총회에서 전 한국에 걸친 총선거의 실시와 선거주관의 책임을 UNTCOK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측의 단독·분리선거 실시안을 지연시키는데 일단 성공하였다. 따라서 초기 UNTCOK의 성격과 목적은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를 통해 독립·통일된 한국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UN총회의 결정에 따라 1947년 1월 8일 부터 내한, 업무를 시작한 UNTCOK의 활동은 소총회의 결정을 전후로 하여 그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며, 이는 UNTCOK 구성원 개각인의 신상과 그 성향을 통해서 잘 시사되고 있다. 즉 23명의 UNTCOK 구성원의 전력과 한국에서의 활동 성향 등을 구명해본 결과 이같은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초기 UNTCOK 위원들은 한국인 지도급 인사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한국인의 입장을 위원단에 반영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미국측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활동을 하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한 두 나라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선임된 UNTCOK 구성원 대부분은 UN총회에서 결의, 위임받은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위한 본래 UNTCOK 목적에 충실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을 취했던 초기 위원들 대부분이 임기중 미국의 압력과 회유로 소환 내지 귀국 하는 한편 그 후임에 친미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됨으로써 UNTCOK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은 UNTCOK의 성격은 이 위원단의 총체적인 활동 성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남·북한 총선거 추진기(총회결정 수행기)까지의 초기 UNTCOK의 활동과 입장은 매우 적극적이며 독자성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미 군정의 간섭 등으로 사실상 남북한 총선거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 문제를 UN 소총회에 회부하게 되었다. 즉, UNTCOK는 한국문제 전체를 원점으로 되돌렸던 것이다. 그러나 소총회는 미국의 외교적 강제 속에서 총회의 결정을 변경하였고, 접근가능지역 선거실시라는 권한외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총회의 결정 이후, UNTCOK는 위원단이 원하지 않았던 남한 단독선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선거실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UNTCOK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측은 1947년 3월 1일 선거일을 공포하였다. 이에 UNTCOK는 소총회 파견대표였던 상임의장과 사무총장이 돌아온 후 선거일 공포를 부정하는 공보를 발표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UNTCOK 내부에서는 잭슨(호주)을 중심으로 한 위원단 철수안 지지파와 미국의 선거안 지지파로 분열, 대립 끝에 결국 위원단은 동년 3월 12일 자유분위기를 전제 조건으로 미군정측이 천명한 선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UNTCOK는 미국측이 주장해 온 남한 단독선거 실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 한 것은 아니었다. UNTCOK의 상임의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반미 성향을 표방했던 위원들은 본국으로 소환되거나 귀국하였고 심지어 캐나다 대표의 경우는 UNTCOK의 결정에 강한 불만의 표시로 활동을 스스로 중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후로 UNTCOK의 활동은 미군정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 활동도 매우 위축되었다.

본격적인 선거감시 국면에 돌입한 UNTCOK는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확보하기 위

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몇몇 위원들은 통일한국을 위한 남·북한 정치지도자 회담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한 단독선거 감시기의 UNTCOK는 선거의 자유분위기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남·북한 정치지도자 회담도 5·10선거의 강행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상 UNTCOK 활동의 이러한 한계는 UNTCOK의 권한 뿐만 아니라 UN총회의 결정사항 까지도 변경하는 미국과 미군정의 정책하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고, 미국의 일관된 의도의 관철이라는 상황과 남한점령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미군정의 정책을 고려할 경우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로 보여지기도 한다.

요컨대 남·북한 총선거 추진기의 UNTCOK는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였고, 남한 단독선거 감시기의 수동적인 역할 강요에 부단히 저항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와 미 군정이 UN과 한국내에서 장악하고 있던 절대적인 영향력과 북한 지역의 비 협조 등으로 UNTCOK는 본래 목적인 통일된 한국정부를 수립은 물론 남북한 총선거 실시도 실행하지 못한채 그 소임을 끝내야 했다.

< 參 考 文 獻 >

1. 자료

* 영문(英文)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1. 미연락장교의 비밀보고서. 1987.
 _____, 『대한민국사자료집』 2. 미연락장교의 비밀보고서. 1988.
 _____, 『대한민국사자료집』 3. 미연락장교의 비밀보고서. 1988.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G-2 WEEKLY SUMMARY -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4. 1990.
 _____, 『G-2 WEEKLY SUMMARY -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5. 1990.

* 국문(國文)자료

- 대한민국건국10년지 간행회, 『大韓民國建國十年志』 1956.
 동아일보, 1945. 12. 28자.
 동아일보, 1945. 12. 29자.
 조선일보, 1946. 1. 4자.
 동아일보, 1946. 1. 4자.
 서울신문, 1946. 1. 5자.
 조선일보, 1946. 1. 9자.
 동아일보, 1946. 1. 9자.

- 조선일보, 1946. 1. 11자.
서울신문, 1946. 3. 21자.
서울신문, 1946. 4. 7자.
서울신문, 1946. 4. 8자.
동아일보, 1946. 4. 9자.
조선일보, 1946. 4. 19자.
동아일보, 1946. 5. 10자.
서울신문, 1946. 6. 4자.
서울신문, 1946. 6. 30자.
서울신문, 1946. 7. 2자.
조선일보, 1946. 12. 3자.
서울신문, 1946. 12. 4자.
조선일보, 1947. 1. 16자.
경향신문, 1947. 1. 16자.
서울신문, 1947. 1. 18자.
경향신문, 1947. 4. 13자.
동아일보, 1947. 4. 13자.
조선일보, 1947. 4. 15자.
서울신문, 1947. 4. 29자.
서울신문, 1947. 5. 22자.
동아일보, 1947. 5. 23자.
조선일보, 1947. 5. 23자.
서울신문, 1947. 5. 25자.

조선일보, 1947. 5. 25자.
동아일보, 1947. 5. 25자.
조선일보, 1947. 6. 10자.
조선일보, 1947. 6. 12자.
동아일보, 1947. 6. 13자.
조선일보, 1947. 6. 25자.
조선일보, 1947. 6. 26자.
동아일보, 1947. 6. 26자.
경향신문, 1947. 6. 26자.
조선일보, 1947. 7. 1자.
서울신문, 1947. 7. 4자.
서울신문, 1947. 7. 6자.
조선일보, 1947. 7. 6자.
동아일보, 1947. 7. 10자.
조선일보, 1947. 7. 10자.
서울신문, 1947. 7. 13자.
서울신문, 1947. 7. 20자.
조선일보, 1947. 7. 22자.
동아일보, 1947. 7. 22자.
동아일보, 1947. 7. 25자.
조선일보, 1947. 7. 25자.
경향신문, 1947. 8. 22자.
서울신문, 1947. 8. 23자.

조선일보, 1947. 8. 23자.

동아일보, 1947. 8. 24자.

조선일보, 1947. 8. 24자.

서울신문, 1948. 1. 15자.

경향신문, 1948. 1. 15자.

동아일보, 1948. 1. 15자.

동아일보, 1948. 5. 14자.

경향신문, 1948. 5. 15자.

2. 저서

노중선 편, 『민족과 통일』 -자료편- 사계절, 1982.

조순승, 『한국분단사』 (형성사, 1982).

서대숙 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배개, 1982).

브루스 커미스 외, 『분단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1983).

프랭크볼드윈 편, 『한국현대사 1945-1975』 (사계절, 1984).

송남헌, 『해방3년사 I』 (까치, 1985).

———. 『해방3년사 II』 (까치, 1985).

이호재,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해방 8년 민족갈등기의 반성- (법문사, 1988. 5판).

동아일보사,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2. 3.

(동아일보사, 1987. 1988. 1990).

제임스 I. 매트레이(구대열 역), 『한반도의 분단과 비극』 - 미국의 대한 정책 1941-1950- (을유문화사, 1989).

- 이수인 역음, 『한국현대정치사 1』 -미군점령시대의 정치사-
(실천문학사, 1989).
-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I』 (박영사, 1990. 제2전정판).
-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1』 (풀빛, 1991).
- 송건호·진덕규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1989).
- 강만길·김광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 박현채·김남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 최장집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 김남식·이종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 1989).
- 박명림·이완범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6』 (한길사, 1989).
- 마크 게인, 도서출판까치 편집부, 『해방과 미군정 1946.10-11』(까치, 1986).
- 정해구, 『10월 인민항쟁 연구』 (열음사, 1988).
- 미국무성 공보국 사료실, 김국태 역, 『해방3년과 미국』 (미국무성 비밀외교
문서.) (돌배기, 1984).
- 브루스 커밍스,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上·下』 (청사, 1986).
- 역사문제연구소, 『해방3년사 연구입문』 (까치, 1989).
- 변형운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48).
- 최상용,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나남, 1989).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한국현대사연구회, 『해방정국과 민족통일전선』
(두리, 1987).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0).
- 리차드 로빈슨, 정미옥 역, 『미국의 배반』 (과학과 사상, 1988).

3. 논문

유석렬, 「정부수립 이전의 한국 이익단체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제17집 (한국정치학회, 1983).

심지연, 「신탁통치 문제와 해방정국」 『한국정치학회보』 제19집 (한국정치학회, 1985).

심지연, 「반탁에서 찬탁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한국정치학회, 1988).

손호철,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비판」 『실천문학』 통권 제15호 (실천문학사, 1989가을).

김학준, 「한반도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국제정치논총』 1987.9월호 (국제정치학회, 1987).

신용증, 「미·소의 대한반도정책, 1943-1948」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1987).

김기윤, 「미군정기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논문, 1989).

오연호, 「미군정의 분열조작 '신탁통치파동」 『말』 1989년 3월호.

강준식, 「미군정의 이승만 옹립 드라마」 『신동아』 1989년 1월호.

진덕규, 「이승만의 단정론과 한민당」 『신동아』 1987년 5월호.

ABSTRACT

A study on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The roles and properties of UNTCOK in 5 · 10 election period-

HA YONG WON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the UNTCOK's activities in Korea and properties. So I researched whole things on UNTCOK.

Firstly I looked into the founding background, purpose, and process of UNTCOK, and then I examined closely where the original properties of UNTCOK had come from. Secondly I examined the commission's members' special characters and background in life, and then studied their activities in detail as possible as I could.

In the base of this research, most basic problem was the commission's independence when I examined UNTCOK's properties closely. And also I examined why UNTCOK handed over Korean problems to Interim Committee, and why UNTCOK took proposals from Interim Committee and watched the general election on South Korea.

I examined UNTCOK's activities in Korea closely, linking the autonomy, heteronomy and so on in 5·10 election period with the relationship with America.